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2017. 4. 18.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검사 의견서**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 목 차

I. 결산검사 경과 .....	5
II.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전라북도 재정의 개황 .....	6
2. 세입세출 결산 요약.....	9
III. 일반회계	
1. 세입결산 .....	10
2. 세출결산 .....	15
IV. 특별회계	
1. 세입결산 .....	18
2. 세출결산 .....	19
V. 재무제표 .....	21
VI. 성과보고서 .....	23
VII. 기타 결산	
1. 채권현재액 .....	25
2. 채무현재액.....	26
3. 기금.....	27
4. 공유재산현재액.....	28
5. 물품현재액.....	29
VIII. 수범사례 및 지적·개선사항.....	31
1. 수범사례(8).....	35
2. 지적 및 개선사항(7).....	47
IX. 현장방문결과 .....	64
X.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65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 결산검사 의견서

수신 : 전라북도지사

2016년도 전라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 검사기간 : 2017년 4월 9일 ~ 4월 18일(10일간)

○ 검사위원

- 대표위원 : 최진호(도의원)
- 위 원 : 정호윤(도의원)
- 위 원 : 정진세(도의원)
- 위 원 : 노인환(세무사)
- 위 원 : 이병희(세무사)
- 위 원 : 조재응(전직 공무원)
- 위 원 : 유희두(전직 공무원)
- 위 원 : 김진술(전직 공무원)
- 위 원 : 장성기(전직 공무원)



# 결산검사 의견서

전라북도지사 귀하

2017 년 4월 18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전라북도 의회로부터 전라북도청 2016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 받아 2017년 4월 9일부터 2017년 4월 18일까지(1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과 「2016회계연도 예산편성 및 운영지침」을 준수하였는지 검사하고, 전라북도의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결산서 및 결산서의 첨부서류가 적정한 지에 대하여 결산서와 회계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답변을 들었으며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 결산(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수범사례로 농산시책 및 안전분야, 취약계층 에너지 시설개선분야, 수요  
 답형 교통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있었으나 특히, 중앙정부 차입금을  
 조기상환하여 일반채무가 없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초과세입에 대한 적절한 예산반영, 전년도 대비 불용액  
 및 이월액 증가, 일부 사업예산에 대한 전액 미집행, 일부 성과지표 미  
 달성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적된 사례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토록 하고, 재정운영에 있어  
 서는 지속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하여 「한국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라는 전라북도의 비전이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 전라북도 결산 검사 위원

대표위원	최진호		검사위원	정호윤	
검사위원	정진세		검사위원	노인환	
검사위원	이병희		검사위원	조재응	
검사위원	유희두		검사위원	김진술	
검사위원	장성기				

# 2016년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 I.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17. 4. 10 ~ 4. 18(10일간)

###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고
위원장	최진호	결산검사 총괄	
위원(간사)	정진세	결산검사 업무 총괄 조정	
위 원	정호윤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노인환	결산검사 업무 전반(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위 원	이병희	결산검사 업무 전반(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위 원	조재응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유희두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김진술	결산검사 업무 전반	
위 원	장성기	결산검사 업무 전반	

### 3. 결산검사 세부일정

일 자 별	결 산 검 사 내 용	비고
4. 9	결산검사 위한 재정상황 파악	
4. 10	결산검사 보고회 및 자료요구	
4. 11~13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4. 14	현장방문(전북119안전체험관, 전북 종합사격장)	
4. 15~17	재정상황 및 건전성 파악	
4. 18	결산검사 폐회	

###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 및 현지 확인조사 실시
- 결산검사 자료는 대표위원을 통하여 자료 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 1. 전라북도 재정의 개황

#### (1) 재정여건

#####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최근 5년간의 세입·세출 및 세계잉여금 등 결산의 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세입은 연평균 6.3% 증가하고 세출은 5.8%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17.9% 증가하였다.

####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세입	4,756,311	5,057,758	5,275,778	5,766,171	6,065,950
세출	4,584,634	4,900,246	5,007,091	5,433,293	5,734,406
세계잉여금	171,676	157,512	268,687	332,878	331,544

##### ○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

2016년 순자산이 전년대비 149,709백만원 증가하여 재정상태는 1.14% 개선되었으며,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전년대비 63,298백만원 (93.97%)이 증가하였다.

#### 전년대비 재무제표 요약분석

(단위: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6년	14,047,196	814,320	13,232,876	5,088,087	4,957,432	130,654
2015년	13,989,612	906,445	13,083,167	4,862,667	4,795,310	67,356
증감	57,584	△92,125	149,709	225,420	162,122	63,298

○ 최근 5년간 채무 추이

최근 5년간 채무의 변동추이는 다음과 같으며 일반회계 차입금은 중앙 정부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였으며, 특별회계 차입금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각종 계약 등 채권발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채무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회계 차입금(a)	160,665	130,671	117,726	100,311	0
특별회계 차입금(b)	578,032	623,911	644,861	689,470	729,023
채무부담행위(c)	0	0	0	0	0
채무 총합계(d=a+b+c)	738,697	754,582	762,587	789,781	729,023

(2) 재정건전성

○ 재정자립도

2016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행정자치부-520, 2017.1.31.)에 의하여 재정운영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한 재정자립도는 총수익에서 자체조달수익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되며, 자체조달수익은 지방세수익, 세외수입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전라 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1.02%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자체재원 보다는 의존재원인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수익과 국고보조금수익, 자치단체부담금수익 등 이전수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6회계연도 자주성 지표 분석**

지 표 명	산 식	비 율
재정자립도	(자체수익 1,069,597백만원/총수익 5,088,087백만원)×100	21.02%

## ○ 안전성

안정성은 총수지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순자산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총수지비율은 총비용이 총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로서 재정운영의 수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며 전라북도의 총수지비율은 97.43%이다.

부채비율은 순자산에 대한 총부채의 비율로 부채는 그 성격상 미래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이므로 순자산에 비해 부채규모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재정운영이 그만큼 경직되고 재정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전라북도의 부채비율은 6.15%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자산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도로나 하천 등 사회기반 시설로 민간기업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특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유동부채를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유동자산으로 나눈 유동비율은 비율이 작을수록 단기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라북도의 유동비율은 27.39%로 안정적수치를 보이고 있다.

순자산비율은 총자산에 대한 순자산의 비율로 전라북도의 순자산비율은 94.20%로 매우 양호하다.

### 2016회계연도 안정성 지표 분석

지 표 명	산 식	비 율
총수지비율	$(\text{총비용 } 4,957,432\text{백만원} / \text{총수익 } 5,088,087\text{백만원}) \times 100$	97.43%
부 채 비 율	$(\text{총부채 } 814,320\text{백만원} / \text{순자산 } 13,232,876\text{백만원}) \times 100$	6.15%
유 동 비 율	$(\text{유동부채 } 184,305\text{백만원} / \text{유동자산 } 672,834\text{백만원}) \times 100$	27.39%
순자산비율	$(\text{순자산 } 13,232,876\text{백만원} / \text{총자산 } 14,047,196\text{백만원}) \times 100$	94.20%

## 2. 세입·세출 결산 요약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세입 · 세출결산 요약

(단위: 원)

회 계 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A)	세출결산액 (B)	차인잔액 (C =A-B)
합 계	6,168,094,080,410	6,065,949,710,133	5,734,406,419,201	331,543,290,932
일 반 회 계	5,233,513,514,410	5,125,346,037,725	4,901,575,835,697	223,770,202,028
특 별 회 계	934,580,566,000	940,603,672,408	832,830,583,504	107,773,088,904
공기업특별회계	446,548,874,000	454,303,519,269	359,232,075,614	95,071,443,655
기 타특별회계	488,031,692,000	486,300,153,139	473,598,507,890	12,701,645,249

회 계 별	다음연도 이 월 액	명시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명시	사고	계속비		
합 계	331,543,290,932 (64,775,741,000)	40,575,264,660 (60,203,000,000)	16,463,656,690 (4,572,741,000)		720,857,862	273,783,511,720
일 반 회 계	223,770,202,028 (60,010,794,000)	40,575,264,660 (55,703,000,000)	14,360,472,260 (4,307,794,000)		632,214,872	168,202,250,236
특 별 회 계	107,773,088,904 (4,764,947,000)	(4,500,000,000)	2,103,184,430 (264,947,000)		88,642,990	105,581,261,484
공기업특별회계	95,071,443,655					95,071,443,655
기타 특별회계	12,701,645,249 (4,764,947,000)	(4,500,000,000)	2,103,184,430 (264,947,000)		88,642,990	10,509,817,829

※ ( )는 자금 없는 이월임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065,949,710,133원으로 예산현액 6,168,094,080,410원보다 102,144,370,277원이 더 수납되었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94.5%인 5,734,406,419,201원으로 차인잔액은 331,543,290,932원이다.

이중 명시이월비 40,575,264,660원, 사고이월비 16,463,656,690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720,857,862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73,783,511,720원이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자금 없는 이월에 대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바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세계잉여금은 331,543,290,932원임이 확인된다.

### Ⅲ. 일반회계

#### 1. 세입결산

##### 세입결산 전년대비 현황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결손처분액 (d)	다음연도이월액 (b-c-d)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비율 (b/a)	징수결정대비 수납비율 (c/b)	징수결정대비 결손비율 (d/b)
2016	5,233,513,514,410	5,164,824,232,881	5,125,346,037,725	3,691,723,240	35,786,471,916	98.7%	99.2%	0.1%
2015	4,940,401,099,790	4,876,577,085,698	4,852,877,572,812	2,884,235,430	20,815,277,456	98.7%	99.5%	0.1%
증 감	293,112,414,620	288,247,147,183	272,468,464,913	807,487,810	14,971,194,460	-	△0.3	-

#### ● 세입결산 개요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5,125,346,037,72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108,167,476,685원(2.1%)이 과소수납 되었고,

징수결정액 5,164,824,232,881원 대비 99.2%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39,478,195,156원(결손처분 3,691,723,240원, 다음연도 이월액 35,786,471,916원)임

- 세입 결산액 5,125,346,037,725원 중 지방세수입 969,307,332,704원(18.9%), 세외수입 84,199,996,781원(1.6%), 지방교부세 760,951,175,000원(14.8%),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이 2,869,727,437,000원(55.9%)으로 보조금이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전년대비 수납액과 비교하면, 지방세 7,338,407,964원, 보조금 169,241,594,240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0,791,050,860원이, 세외수입 3,082,299,849원, 지방교부세 82,015,112,000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 전년대비 수납액 증가원인은 부가가치세 증가에 따른 지방소비세 14,526,861,110원 증가, 징수교부금수입 1,910,017,220원 증가 및 FTA 폐업지원금 증액 등으로 국고보조금 등 169,241,594,240원 증가 하였다.

##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원)

구분	합계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 타
합 계	3,691,723,240	1,252,824,450	69,528,770	149,453,490	316,766,920	1,903,149,610
지방세수입	3,412,277,340	1,010,150,860	67,927,770	116,214,360	316,766,920	1,901,217,430
세외수입	279,445,900	242,673,590	1,601,000	33,239,130	-	1,932,180

### ● 세입금 결손처분에 있어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99.4%이며, 결손처분액은 3,691,723,240원으로서 지방세 3,412,277,340원, 세외수입 279,445,900원이다. 결손처분 주요사유는 무재산 1,252,824,450원 행방불명 69,528,770원, 시효소멸 149,453,490원, 배분금액부족 316,766,920원, 기타사유가 1,903,149,610원이다.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단위: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차액
5,125,346,037,725	5,125,346,037,725	-

### ●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고출납계산서와 대사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장부와 금고 증빙서를 대사한 결과 결산액은 일치되었다.

< 일반회계 세입결산 >

(단위 : 원)

구 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결손처분액 (c)	다음연도이월액 (a-b-c)
2016	5,233,513,514,410	5,164,824,232,881	5,125,346,037,725	3,691,723,240	35,786,471,916
2015	4,940,401,099,790	4,876,577,085,698	4,852,877,572,812	2,884,235,430	20,815,277,456
증 감	293,112,414,620	288,247,147,183	272,468,464,913	807,487,810	14,971,194,460

< 세입 과목별 총괄 >

(단위 : 원)

과목구분	2016 예산현액 (a)	2015수납액 (b)	2016수납액 (c)	예산대비 수납차액 (c-a)	전년대비 수납차액 (c-b)
합 계	5,233,513,514,410	4,852,877,572,812	5,125,346,037,725	△108,167,476,685	272,468,464,913
지방세	961,693,000,000	961,968,924,740	969,307,332,704	7,614,332,704	7,338,407,964
세외수입	77,355,278,000	81,117,696,932	84,199,996,781	6,844,718,781	3,082,299,849
지방교부세	760,801,175,000	678,936,063,000	760,951,175,000	150,000,000	82,015,112,000
보조금	2,932,684,342,000	2,700,485,842,760	2,869,727,437,000	△62,956,905,000	169,241,594,240
지방채및예차금	-	-	-	-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500,979,719,410	430,369,045,380	441,160,096,240	△59,819,623,170	10,791,050,860

< 지방세 >

(단위 : 원)

과목구분	2016 예산현액 (a)	2015수납액 (b)	2016수납액 (c)	예산대비 수납차액 (c-a)	전년대비 수납차액 (c-b)
합 계	961,693,000,000	961,968,924,740	969,307,332,704	7,614,332,704	7,338,407,964
취 득 세	468,833,000,000	484,408,287,440	466,481,661,460	△2,351,338,540	△17,926,625,980
등록면허세	41,759,000,000	45,852,102,170	41,095,301,714	△663,698,286	△4,756,800,456
지방소비세	254,266,000,000	252,283,100,120	266,809,961,230	12,543,961,230	14,526,861,110
지역자원시설세	32,607,000,000	29,672,066,700	32,707,789,530	100,789,530	3,035,722,830
지방교육세	157,501,000,000	145,286,259,310	155,837,458,500	△1,663,541,500	10,551,199,190
지난연도수입	6,727,000,000	4,467,109,000	6,375,160,270	△351,839,730	1,908,051,270

< 세외수입 >

(단위 : 원)

과목구분	2016 예산현액 (a)	2015수납액 (b)	2016수납액 (c)	예산대비 수납차액 (c-a)	전년대비 수납차액 (c-b)
합 계	77,355,278,000	81,117,696,932	84,199,996,781	6,844,718,781	3,082,299,849
경상세외수입 소 계	23,272,290,000	21,930,387,842	24,586,494,660	1,314,204,660	2,656,106,818
재산임대수입	586,124,000	576,707,884	623,528,687	37,404,687	46,820,803
사용료수입	3,929,940,000	3,106,069,630	3,793,110,883	△136,829,117	687,041,253
수수료수입	5,223,998,000	5,332,907,030	5,580,201,440	356,203,440	247,294,410
사업수입	1,552,228,000	1,797,951,530	1,527,382,570	△24,845,430	△270,568,960
징수교부금	7,802,192,000	5,693,207,990	7,603,225,210	△198,966,790	1,910,017,220
이자수입	4,177,808,000	5,423,543,778	5,459,045,870	1,281,237,870	35,502,092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54,082,988,000	59,187,309,090	59,613,502,121	5,530,514,121	426,193,031
재산매각수입	2,133,333,000	1,434,544,760	1,672,795,260	△460,537,740	238,250,500
부 담 금	11,351,692,000	11,144,694,650	12,385,291,480	1,033,599,480	1,240,596,830
과징금및 과태 료등	718,717,000	693,504,270	908,693,270	189,976,270	215,189,000
기 타 수 입	38,491,832,000	44,618,803,000	43,089,254,620	4,597,422,620	△1,529,548,380
지난연도수입	1,387,414,000	1,295,762,410	1,557,467,491	170,053,491	261,705,081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단위 : 원)

과목구분	2016 예산현액 (a)	2015수납액 (b)	2016수납액 (c)	예산대비 수납차액 (c-a)	전년대비 수납차액 (c-b)
합 계	500,979,719,410	430,369,045,380	441,160,096,240	△59,819,623,170	10,791,050,860
보전수입등 소계	208,695,322,410	200,803,029,380	208,695,323,240	830	7,892,293,860
순세계잉여금	157,288,017,000	164,294,473,000	157,288,017,430	430	△7,006,455,570
전년도이월금	51,407,305,410	36,508,556,380	51,407,305,810	400	14,898,749,430
내부거래 소계	292,284,397,000	229,566,016,000	232,464,773,000	△59,819,624,000	2,898,757,000
전입금	198,784,397,000	94,794,916,000	138,964,773,000	△59,819,624,000	44,169,857,000
예탁금및예수금	93,500,000,000	134,771,100,000	93,500,000,000	-	△41,271,100,000

< 전년대비 실제수납액 비교 >

(단위 : 원)

구 분	2016년 (a)	2015년 (b)	차 액 (a-b)
합 계	5,125,346,037,725	4,852,877,572,812	272,468,464,913
지방세	969,307,332,704	961,968,924,740	7,338,407,964
세외수입	84,199,996,781	81,117,696,932	3,082,299,849
경상세외	24,586,494,660	21,930,387,842	2,656,106,818
임시세외	59,613,502,121	59,187,309,090	426,193,031
지방교부세	760,951,175,000	678,936,063,000	82,015,112,000
보조금등	2,869,727,437,000	2,700,485,842,760	169,241,594,240
지방채(국내차입금)	-	-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41,160,096,240	430,369,045,380	10,791,050,860

## 2. 세출결산

### ○ 총괄

(단위 : 원)

구분	세출예산액 (a)	전년도이월액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2016	5,037,467,492,000	196,046,022,410	5,233,513,514,410	4,901,575,835,697
2015	4,848,910,127,000	91,490,972,790	4,940,401,099,790	4,644,182,249,563

구분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c-d-e)
	계(e)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6	114,946,530,920	96,278,264,660	18,668,266,260	216,991,147,793
2015	196,046,022,410	82,696,554,930	113,349,467,480	100,172,827,817

### ● 세출결산 개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5,037,467,492,000원과 전년도이월액 196,046,022,41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233,513,514,410원이며, 4,901,575,835,697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4,946,530,920원, 집행잔액은 216,991,147,793원이다.

다음연도 이월액 114,946,530,920원 중에는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발생한 “자금없는 이월액” 60,010,794,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 금고 지출자료와 대사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지출결산액과 금고 증빙서를 대사한 결과 일치한다.

(단위: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차액
4,901,575,835,697	4,901,575,835,697	-

● **이용·전용 및 이체에 있어**

- 예산이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4개부서 4건 292,026,000원이며
- 예산이체는 2개부서 3건, 58,967,736,500원으로, 이는 업무조정 및 미륵 사지유물전시관 폐지로 인하여 업무가 국가로 이관되어 발생한 것으로 예산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다.

● **예산의 이월에 있어**

본 연도의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는 다음과 같다.

〈명시·사고이월 결산 현황〉

(단위 : 원)

구분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비고
합 계	114,946,530,920 (60,010,794,000)	96,278,264,660 (55,703,000,000)	18,668,266,260 (4,307,794,000)	

※ ( )는 자금없는 이월액

검사결과 명시이월은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등 96,278,264,660원, 사고이월 사업은 재난대비 안전관리 등 18,668,266,260원으로서 각각 이월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이 적정하였다.

이월액 114,946,530,920원중에는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발생한 “자금없는 이월액” 60,010,794,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 **채무부담행위**

2016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 신규발생액은 없다.

● **다른회계로부터 전입금·전출금, 예탁금·예수금**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117,000,000,000원을 전입하였고, 기금 26,500,000,000원(농림수산발전기금 10,000,000,000원, 환경보전기금 2,000,000,000원, 자활기금 2,000,000,000원, 식품진흥기금 1,500,000,000원, 체육진흥기금 4,000,000,000원, 남북교류협력기금 7,000,000,000원)을 일반회계 예수금으로 수입처리 하였다.

● **예비비 사용에 있어**

○ **현 황**

(단위 : 원)

회계구분	예산액	지출결정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c=a-b)
합 계	150,331,942,000	3,115,026,000	3,065,375,845	49,650,155
일반회계	150,331,942,000	3,115,026,000	3,065,375,845	49,650,155

○ **내 용**

예비비 예산액 150,331,942,000원으로서 쾌적한 청사관리 사업외 30건 3,115,026,000원을 지출결정하여 3,065,375,845원을 집행하고 49,650,15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

사용내역을 보면 AI관련 비상지원에 265,500,000원, 구제역 관련 백신 구입비 등에 1,361,761,405원, 재해관련 긴급복구 지원에 690,945,000원, 시설 보수에 603,620,860원, 지방선거 관리경비 143,548,580을 사용하였다.

## IV. 특별회계

### 1. 세입결산

#### 가. 총괄

(단위 : 원)

구분	세입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결손처분액 (c)	다음연도이월액 (a-b-c)
2016	934,580,566,000	940,603,672,408	940,603,672,408	-	-
2015	902,025,973,000	913,293,750,441	913,293,750,441	-	-
증감	32,554,593,000	27,309,921,967	27,309,921,967	-	-

#### 나. 회계별

(단위 : 원)

회계구분	2016 예산현액 (a)	2015수납액 (b)	2016수납액 (c)	예산대비 수납 (c-a)	전년대비 수납 (c-b)
합계	934,580,566,000	913,293,750,441	940,603,672,408	6,023,106,408	27,309,921,967
기타특별회계 소계	488,031,692,000	437,571,451,139	486,300,153,139	△1,731,538,861	48,728,702,000
농어촌주택사업	13,903,590,000	17,091,103,450	16,911,055,240	3,007,465,240	△180,048,210
의료급여기금	398,848,023,000	388,731,937,579	398,851,051,399	3,028,399	10,119,113,820
동부권	35,685,716,000	31,748,410,110	30,921,048,630	△4,764,667,370	△827,361,480
지역자원시설	39,594,363,000	-	39,616,997,870	22,634,870	39,616,997,870
공기업특별회계	446,548,874,000	475,722,299,302	454,303,519,269	7,754,645,269	△21,418,780,033
지역개발기금	446,548,874,000	475,722,299,302	454,303,519,269	7,754,645,269	△21,418,780,033

#### ● 세입결산 개요

수납액 940,603,672,408원은 예산현액 934,580,566,000원의 100.64%로서 6,023,106,408원이 초과 수납되었다.

기타특별회계 중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3,007,465,24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3,028,399원, 지역자원시설특별회계에서 22,634,870원을 각각 초과수납 되었고, 동부권특별회계는 4,764,667,370원 과소 수납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754,645,269원 초과수납되어 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6,023,106,408원 초과 수납하였다.

## ● 금고 수납자료와 대사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과 금고 증빙서를 대사한 결과 일치한다.

(단위:원)

수납액	금고 출납계산서	차액
940,603,672,408	940,603,672,408	-

## 2. 세출결산

### 가. 총괄

(단위 : 원)

구분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금	예산현액	지출액
2016	929,021,566,000	5,559,000,000	934,580,566,000	832,830,583,504
2015	892,226,973,000	9,799,000,000	902,025,973,000	789,110,770,079

구분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c-d-e)
	계(e)	명시이월	사고이월	
2016	6,868,131,430	4,500,000,000	2,368,131,430	94,881,851,066
2015	5,559,000,000	1,655,000,000	3,904,000,000	107,356,202,921

### 나. 회계별

(단위 : 원)

회계구분	예산현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계	934,580,566,000	835,194,351,334	832,830,583,504	6,868,131,430	94,881,851,066
기타특별회계	488,031,692,000	475,962,275,720	473,598,507,890	6,868,131,430	7,565,052,680
농어촌주택사업	13,903,590,000	13,903,589,200	13,903,589,200	-	800
의료급여기금	398,848,023,000	393,910,376,240	393,910,376,240	-	4,937,646,760
동부권	35,685,716,000	31,059,000,000	30,794,053,000	4,764,947,000	126,716,000
지역자원시설	39,594,363,000	37,089,310,280	34,990,489,450	2,103,184,430	2,500,689,120
공기업특별회계	446,548,874,000	359,232,075,614	359,232,075,614	-	87,316,798,386
지역개발기금	446,548,874,000	359,232,075,614	359,232,075,614	-	87,316,798,386

## ● 세출결산 개요

예산 현액은 934,580,566,000원이며, 세출예산 전용·이용·이체는 없으며, 예비비 사용액도 해당없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9.11%에 해당하는 832,830,583,504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15%에 해당하는 94,881,851,066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87,316,798,386원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

## ● 세출결산액

2016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결산액과 금고 증빙서를 대사한 결과 일치한다.  
(단위:원)

지출액	금고 출납계산서	차액
832,830,583,504	832,830,583,504	-

## ● 이용·전용·이체에 있어

해당없음

## ● 다른회계로부터 전입금·전출금, 예탁금·예수금이 있어

전출금은 일반회계로부터 87,411,372,000원을 동부권특별회계로 30,794,053,000원, 의료기금특별회계로 56,617,319,000원으로 전입받았고, 예탁금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67,000,000,000원을 일반회계로 예수금 처리하였다.

## ● 예산의 이월이 있어

동부권 발전지원사업비 관련 국비 4,764,947,000원을 국비 미교부로 과소수납됨에 따라 당해 사업을 자금없이 4,500,000,000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고, 자금없이 264,947,000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다.

## V. 재무제표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6	2015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14,047,196	13,989,612	57,584	0.41%
I. 유 동 자 산	672,834	705,342	△32,508	△4.61%
II. 투 자 자 산	524,538	551,338	△26,800	△4.86%
III. 일 반 유 형 자 산	629,296	577,633	51,663	8.94%
IV. 주 민 편 의 시 설	162,283	165,848	△3,565	△2.15%
V. 사 회 기 반 시 설	12,050,400	11,981,435	68,965	0.58%
VI. 기 타 비 유 동 자 산	7,845	8,016	△171	△2.13%
부 채	814,320	906,445	△92,125	△10.16%
I. 유 동 부 채	184,305	231,594	△47,289	△20.42%
II. 장 기 차 입 부 채	602,161	645,944	△43,783	△6.78%
III. 기 타 비 유 동 부 채	27,854	28,907	△1,053	△3.64%
순 자 산	13,232,876	13,083,167	149,709	1.14%
I. 고 정 순 자 산	12,849,198	12,632,154	217,044	1.72%
II. 특 정 순 자 산	235,281	238,582	△3,301	△1.38%
III. 일 반 순 자 산	148,397	212,431	△64,034	△30.14%

2016회계연도말 전라북도의 자산은 14조 471억 96백만원으로 전년도의 13조 9,896억 12백만원보다 575억 84백만원(0.41%) 증가하였는데, 이는 세입세출 외단기보관현금이 감소하는 등 유동자산이 △32,508백만원(△4.61%) 감소하였으나, 일반공공행정시설과 사회기반시설인 도로 및 하천 등의 공공시설자산의 영향으로 일반유형자산 51,663백만원(8.94%)과 사회기반시설이 68,965백만원(0.58%)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2016회계연도말 전라북도의 부채는 814,320백만원으로 전년도의 906,445백만원보다 △92,125백만원(△10.16%) 감소하였는데, 이는 정부자금 차입과 민간자금차입인 장기차입부채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 분	2016	2015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I. 사업순원가 (가 - 나)	1,709,684	1,143,290	566,394	49.54%
가. 사업총원가	4,601,347	4,258,251	343,096	8.06%
나. 사업수익	2,891,663	3,114,961	△223,298	△7.17%
II. 관리운영비	316,987	499,625	△182,638	△36.56%
III. 비배분비용	39,098	37,433	1,665	4.45%
IV. 비배분수익	105,304	164,389	△59,085	△35.94%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1,960,466	1,515,959	444,507	29.32%
VI. 일반수익	2,091,120	1,583,315	507,805	32.07%
VII. 재정운영결과 (V - VI)	(130,654)	(67,356)	△63,298	△93.98%

전라북도 2016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사업총원가 4,601,347백만 원에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2,891,663백만 원을 차감한 1,709,654백만 원이며, 총150개의 정책사업 중 순원가가 많은 상위 정책사업은 ‘교육재정지원’( 210,786백만 원)와 ‘농촌활력 정책추진’( 61,809백만 원)이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중에 발생한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312,945백만 원과 경비 7,251백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2,066백만 원, 기타비용 37,032백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배분수익은 자체조달수익 56,093백만 원, 기타수익 49,210백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회계연도 전라북도 재정운영결과는 △130,654백만 원으로 전년도의 △67,356백만 원보다 △63,298백만 원(△93.98%) 감소하였는데, 이는 사업수익과 관리운영비, 비배분수익이 각각 223,298만 원, 182,638백만 원, 59,085백만 원 감소하였으나, 사업총원가와 비배분비용이 각각 343,096백만 원, 1,665백만 원 증가하여 재정운영순원가가 444,507백만 원(29.32%) 증가하였다.

# VI. 성과보고서

##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2016 결산액
		개수	지표수 (A)	초과달성 (B)	달성 (C)	미달성수 (D)	달성률 (B+C)/A	
19개 실국원소	19	133	304	26	267	11	96.4%	5,375,174
감 사 관	1	1	3	0	3	0	100.0%	475
공 보 관	1	1	1	0	1	0	100.0%	1,163
기 획 조 정 실	1	5	16	0	15	1	93.8%	819,797
도 민 안 전 실	1	5	13	2	11	0	100.0%	118,182
자 치 행 정 국	1	7	13	2	9	2	84.6%	96,085
농축수산식품국	1	6	18	1	17	0	100.0%	852,772
문화체육관광국	1	7	19	2	17	0	100.0%	230,244
환 경 녹 지 국	1	6	18	3	14	1	94.4%	188,454
복지여성보건국	1	13	28	0	28	0	100.0%	1,932,156
건 설 교 통 국	1	11	24	3	19	2	91.7%	369,031
소 방 본 부	1	4	5	0	5	0	100.0%	97,662
경 제 산 업 국	1	14	28	4	24	0	100.0%	182,438
대 외 협 력 국	1	3	9	1	8	0	100.0%	17,460
새만금추진지원단	1	2	5	1	3	1	80.0%	168,590
의 회 사 무 처	1	3	9	3	6	0	100.0%	10,609
농 업 기 술 원	1	10	27	1	26	0	100.0%	40,947
공 무 원 교 육 원	1	3	8	0	8	0	100.0%	6,052
보건환경연구원	1	2	7	0	7	0	100.0%	7,449
사 업 소	1	30	53	3	46	4	92.5%	235,608

전라북도에서는 「지방재정법」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전라북도는 2016회계연도의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9개)-정책사업 목표(133개)-단위사업(36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133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0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전라북도의 성과관리대상사업 결산액은 5,375,174백만원이며, 실과중 13개의 실과는 100%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6개의 실과는 80% 이상 100% 미만의 달성률을 보였다.

## Ⅶ. 기타결산

### 1. 채권현재액

#### ○ 현 황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발생액	소멸액	현년도말
합 계	462,610,406,975	83,669,620,855	103,855,657,310	442,424,370,520
일 반 회 계	20,628,670,250	1,018,145,280	756,972,120	20,889,843,410
공 기 업	363,998,000,000	79,350,367,370	86,472,367,370	356,876,000,000
기타특별회계	74,114,610,460	2,861,081,940	15,155,175,290	61,820,517,110
기 금	3,869,126,265	440,026,265	1,471,142,530	2,838,010,000

#### ○ 내 용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2,424,370,520원이며, 전년대비 20,186,036,455원 감소하였다. 당해연도중 83,669,620,855원이 발생되었고 103,855,657,310원이 소멸하였다. 채권 종류별로는 보증금이 19,973,850원, 융자금 442,398,333,090원, 기타채권이 6,063,580원이다.

주된 감소 사유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 등에서 발생한 융자금 채권 20,104,742,455원이 만기도래로 회수됨에 따라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채무현재액

### ○ 현 황

(단위 : 원)

회 계 별	전년도말 (a)	발생액 (b)	소멸액 (c)	현재액 (a+b-c)
합 계	789,780,705,000	167,142,985,000	227,900,590,000	729,023,100,000
일반회계	100,310,800,000	-	100,310,800,000	-
공 기 업	689,469,905,000	167,142,985,000	127,589,790,000	729,023,100,000

### ○ 내 용

검사결과 채무는 전년대비 60,757,605,000원이 감소한 729,023,100,000원이다. 당해연도중 167,142,985,000원이 발생하였고, 227,900,590,000원이 소멸하였다. 채무 종류별로 지역개발채권 729,023,100천원, 정부차입금 0원, 민간차입금 0원이다. 향후 5년간 채무 상환예정은 다음과 같다.

### 채무상환 예정액

(단위 : 원)

구 분	2016년말 채무현재액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729,023,100,000	126,862,335,000	133,845,280,000	142,829,305,000	158,580,480,000	166,905,700,000
지역개발채권	729,023,100,000	126,862,335,000	133,845,280,000	142,829,305,000	158,580,480,000	166,905,700,000
정부차입금	-	-	-	-	-	-
민간차입금	-	-	-	-	-	-

현재시점에서 지역개발채권의 이자율은 고정금리 2.5%, 민간차입금 이자율은 변동금리 2.68%, 정부차입금의 이자율은 변동금리 1.17% 또는 3.0%임을 확인했다.

### 3. 기금

#### ○ 현 황

(단위 : 원)

종류별	전년도말 (a)	조성액 (b)	사용액 (c)	현년도말 (a+b-c)
합 계	356,536,080,696	83,213,923,963	78,919,816,727	360,830,187,932
중소기업육성기금	201,704,951,553	17,789,361,878	21,671,094,303	197,823,219,128
농림수산물발전기금	22,814,052,256	3,341,876,392	928,291,178	25,227,637,470
환경보전기금	2,071,412,738	38,780,642	30,000,000	2,080,193,380
자 활 기 금	5,776,724,618	288,416,561	510,000,000	5,555,141,179
재해구호기금	17,970,876,147	3,400,475,060	431,695,000	20,939,656,207
성 평 등 기 금	3,277,625,399	116,050,945	100,000,000	3,293,676,344
노인복지기금	2,073,504,422	76,066,020	62,000,000	2,087,570,442
재난관리기금	21,640,984,349	6,527,452,622	3,200,498,320	24,967,938,651
문화예술진흥기금	25,431,086,967	2,892,170,909	28,323,257,876	-
식품진흥기금	8,669,894,874	1,813,219,922	556,109,000	9,927,005,796
체육진흥기금	8,279,003,941	883,386,093	-	9,162,390,034
남북교류협력기금	6,825,963,432	1,439,795,869	-	8,265,759,301
통합관리기금	30,000,000,000	44,606,871,050	23,106,871,050	51,500,000,000

#### ○ 내 용

검사결과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의 2016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360,830,187,932원이며 전년대비 4,294,107,236원 증가하였다.

당해연도중 83,213,923,963원을 조성하였고, 78,919,816,727원을 사용하였다.

의무적으로 적립할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며,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5조에 의거 매년 최저적립액을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매년도 최저적립액을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계 법령에 의거 2016년도 중 재해구호기금은 3,026,000,000원, 재난관리기금은 6,050,000,000원을 각각 적립하여 관련법에서 정한 의무 적립 비율에 상응하게 기금을 적립 운용하고 있다.

또한 2016회계연도의 기금 지출액은 78,919,816,727원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맞추어 적정하게 집행하였다.

아울러, 기금 연도말 조성액에는 일반회계로 예탁한 51,5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4. 공유재산현재액

### ○ 현 황

(단위 : 원)

용 도 별		전년도말(a)	증감액(b)	현재액(a+b)
합 계		1,038,057,926,704	11,779,653,435,663	12,817,711,362,367
행정 재산	공 용 재 산	734,928,591,387	101,473,033,348	836,401,624,735
	공공용재산	246,657,964,715	11,668,832,875,447	11,915,490,840,162
	보존용재산	19,070,451,650	△3,338,357,450	15,732,094,200
일 반 재 산		37,400,918,952	12,685,884,318	50,086,803,270

### ○ 내 용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대비 11,779,653,435,663원이 증가한 12,817,711,362,367원이다.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 42,220,333,961원, 건물 11,336,198,037원, 입목죽 56,112,550원, 공작물 11,711,725,602,415원, 선박 4,373,363,600원, 유가증권 10,000,000,000원은 증가하였고 기계·기구 8,751,000원, 무체재산 49,423,900원은 감소하였다.

재산은 용도별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보존용재산 등이 있다. 공용재산은 836,401,624,735원, 공공용재산은 11,915,490,840,162원, 보존용재산은 15,732,094,200원, 일반재산은 50,086,803,270원이다.

## 5. 물품현재액

○ 현 황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취득	처분	
수 량	3,447	1,189	1,159	3,477
금 액	62,094,136,000	47,569,955,000	34,650,871,000	75,013,220,000

○ 내 용

검사결과 물품은 전년도 보다 12,919,084,000원이 증가한 75,013,22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주요변동사유는 화물트럭 13대 증가 및 덤프트럭 9대 등 증가로 전년대비 정수물품 30대 증가하였음



## VIII

# 수범사례 및 지적 · 개선사항



# 목 차

## 【 수범 사례 】

1. 외부 채무 제로화 달성
2.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 달성
3. 2016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4. 농산시책 추진 최우수기관 선정
5.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실현과 절약을 위한 시설개선 추진
6. 전국최초 버스 DRT(수요응답형교통, 일명:콜버스)
7. 새만금 전문가 협의체 운영
8. 다문화마을학당 운영 내실화

## 【 지적.개선사항 】

1. 순세계 잉여금 발생률 증가 추세
2. 초과세입에 대한 추경예산편성시 적절한 반영 필요
3.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방안 강구
4. 결손처분시 처리절차 강화 방안 필요
5. 세출예산 전액이월 과다발생 방지방안 필요
6. 사업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감소방안 강구
7. 예산의 성과보고서 실적검증 방법 보완 필요



# 수 범 사 례



# 1 외부 채무 제로화 달성

## □ 채무현황

구 분	'13년말	'14년말	'15년말	'16년말	비고
계	7,546	7,626	7,898	7,290	
외부채무(은행/정부자금)	1,307	1,177	1,003	-	
지역개발대출공채*	6,239	6,449	6,895	7,290	

- \* 지방공기업법 근거 자동차 신규등록 등에 의무 발행 채권(17시·도)으로 행자부 채무 통계기준으로 채무에 포함  
 - 경제규모 증가에 따른 채권발행 규모 확대에 17개 시·도가 매년 증가 추세

## □ 추진사항

- '15년에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조정 50억원 이자절감  
 \* 농협 904억원(3.79%→2.68%)/지역개발차입금 797억원(4%→3%)
- 3년간('14~'16년) 1,780억원 채무 조기 상환  
 \* ('14년) 80억원 → ('15년) 50억원 → ('16년) 1,650억원

## □ 추진성과

- 2013년말 1,307억원에 달했던 외부 채무(은행/정부) 상환 완료
- 도민1인당 채무액은 39만 1천원으로 2015년말 42만 3천원 대비 3만 2천원이 감축
- 채무 조기상환으로 332억원의 이자부담 절감 효과 거양
- 17개 시·도 중 외부 채무(차입금) 없는 시·도\*에 포함  
 \* 경기·경남·경북·충남·충북·전북·세종
- 지방채 상환 부담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 산업 등 전북발전 핵심 사업을 적극 뒷받침

※ 관련부서 : 예산과

## 2 지방세 과오납 최소화 운영

### □ 현황(개요)

(단위 : 억원)

징수액(A)	과오납액(B)	과오납율(B/A)	비고
9,693	52	0.54%	· 과오납율 전국 1위(최저)

※ 전국 평균 과오납율 3.50%

### □ 추진사항

- 부과단계부터 철저한 과세자료관리
  - 감면대상, 소유권의 이전·말소 등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 관리 철저
- 취득세 신고처리시 납세자 감면 착오신고 등 최소화
  - 납세자 신고시 감면사항 및 필요한 제출서류 등을 충분히 안내
- 각종 회의, 시군 현장 점검시 과오납 최소화를 위한 업무지도 및 교육 강화
- 과오납 발생 유형분석으로
  - 착오부과 420백만원, 이중납부 186백만원, 불복청구 372백만원, 기타 4,182백만원임
  - ※ 기타 : 납세자 착오 3,192백만원, 자동차이전 등 세정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990백만원

### □ 추진성과

- 과오납발생 최소화 노력으로 2년연속 과오납율 전국 1위
  - 전년 과오납액 5,410백만원 대비 250백만원 축소
- 마을세무서(77명) 세무상담시 상세한 상담으로 착오신고 최소화
- 신뢰받는 세정운영으로 자진납부 등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 ※ 2016년 모범납세자 935명 선정
- 납세자 및 행정기관의 과오납 처리비용 절감

※ 관련 부서 : 세정과

### 3 2016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 □ 개요

- (진단기간) '16. 2. 15. ~ 4. 30.(75일)
- (진단주체) 도, 시·군, 민간전문가 등
- (진단대상) 도, 시·군 공공·민간시설 등 안전관리대상 전 분야
  - 하드웨어(시설물 균열·침하 등) + 소프트웨어(법규미비·미제정 등)
  - 안전 사각지대(캠핑장, 낚시배 등), 안전신고·제안사항 등 진단
- (진단방법) 자체점검, 민관합동점검
- (진단결과) 18,664건 점검, 1,626건 지적(현지시정671, 보수보강869, 정밀진단86)

#### □ 추진사항

- 시설물 등 안전점검 추진
  - 시설물, 건축물, 안전사각지대 등 총 7개분야 18,664건 점검, 참여인원 29,081명
  - ※ 교량, 터널, 도로, 공동주택, 대형건축물, 고시원, 터미널, 급경사지, 옹벽, 공작물, 주유소, 고압가스 충전소, 유해화학물, 문화재 시설, 경기장, 도서관, 낚시어선 등
- 간부공무원 현장행정 실시로 관심도 제고
  - 도지사를 비롯한 실국장 및 시군 단체장 전원 1회 이상 실시
- 안전신문고 앱 활용을 통한 위험요소 신고 및 처리
  - 가입인원 4,414명, 신고건수 2,056건 ※신고순위 : 전국 道중 2위
- 다양한 홍보를 통한 도민 참여 확산
  - TV·라디오·신문 등 대중매체 홍보(1,086회), 온라인·전광판 노출(530,845회), 각종 고지서, 게시판, 현수막, 전단지 등 배포(101,104매)

#### □ 추진성과

-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으로 재해위험요소 해소
  - 보수보강 548건, 정밀진단 63건 조치완료(※나머지는 연도별 예산확보 등 지속 해소 추진)
- 안전진단 관련 특수시책(16건) 및 제도 개선과제(9건) 발굴, 우수사례(17건) 추진 등
- 국민안전처 평가 결과 전국 1위로 대통령기관표창 수상
  - ※ 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4824(2016.11.18., 국가안전대진단 및 물놀이 안전관리 유공 정부포상 결정 통보)

※ 관련부서 : 사회재난과

## 4 농산시책 추진 최우수기관 선정

### □ 평가개요

- 평가목적 : 식량작물 안정생산 사업성과 제고 및 종사자의 사기 앙양
- 평가대상 : 전국 도(쌀 생산량이 많은 광역자치단체)
- 평가방법 : 최우수(1), 우수(2), 장려(5) 3단계 평가  
→ 농식품부 내부 평가 및 외부 전문가 심의
- 평가내용 : 벼 재배면적 확보, 생산기반조성, 경영안정, 대책 추진 적극성 등
- 평가주기/ 최초 시행시기 : 매년 / 1996년
-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식량산업과)

### □ 추진사항

- 평가 대비 도 및 시·군 「쌀 적정생산 추진단」 구성·운영 : 3 ~ 12월
- 「쌀 안정생산 대책」 수립 추진 : 4 ~ 10월
  - 「쌀 안정생산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 5 ~ 10월  
→ 시·군별 벼 적정목표면적 부여 및 관리, 논 타작물 전환 확대
  - 우량품종 종자 공급, 벼 재해보험 활성화, 병해충 방제, 생산유통기반 조성
  - 밥맛 좋은 쌀 생산을 위한 「쌀 적정생산 운동」 전개  
→ 질소 표준시비량 준수(9kg/10a), 밀식재배 억제, 밥맛 좋은 벼 품종 재배 확대
- 농산시책 추진 평가자료 제출 : 11월
  - 논 타작물 전환 목표 달성, 쌀 안정생산기반 조성, 쌀 적정생산 운동 전개 등

### □ 추진성과

- 농산시책 추진 도(광역자치단체) 부문 전국 ‘최우수(1위)’ 수상
  - 쌀 안정생산 등 전북 식량산업 정책 우수성 정부 인정 및 전국적 인지도 제고  
· ('13) 장려상 → ('14) 장려상 → ('15) 장려상 → ('16) 최우수상
  - ※ 2004년 최우수 수상후 12년만에 정상 탈환
-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 가시적 성과 도출과 대내외 이미지 강화

※ 관련부서 : 친환경유통과

## 5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실현과 절약을 위한 시설개선 추진**

###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등 19,667세대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장애인, 독거노인 등)
- 사업기간 : 2016. 1 ~ 2016.12 (1년간)
- 총사업비 : 5,731백만원 [ 국 4,205, 지방비(도비 301, 시군비 1,225) ]
- 주요 사업내용
  -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LED 설치지원
  - LPG 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등 가스시설 개선지원
  - 보일러 수리 및 노후부품 교체 등(에너지홈닥터 사업)

### □ 추진실적

- 사업대상 발굴 및 사업제안서 신청(산업부, 에너지공단) : '15. 4
- 심사결과 반영 및 지원가구 확정(정부 예산안 반영) : '15. 9
  - '16년 국비 4,205백만원 확보( '15년 대비 1,502백만원 추가 확보)
- 업무협약(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열관리시공협회) 및 사업추진 : '16.1~12

### □ 추진성과

-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에 고효율 LED 등기구 설치 및 보일러 수리로 에너지 절약 및 연료비 절감 도모
-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사고 예방 및 생활안정에 기여
- 연도별 추진성과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14년		2015년		2016년	
	세대	사업비 (국비)	세대	사업비 (국비)	세대	사업비 (국비)
3개 사업	19,294	4,023 (2,948)	14,258	3,664 (2,703)	19,667	5,731 (4,205)
지역에너지 전력효율향상 사업	6,556	1,646 (1,150)	3,134	1,593 (1,150)	4,928	2,755 (1,928)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	10,236	2,247 (1,798)	8,624	1,941 (1,553)	12,317	2,846 (2,277)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 사업	2,502	130	2,500	130	2,422	130

※ 관련부서 : 산업진흥과

## 6 전국최초 버스DRT(수요응답형교통, 일명:콜버스)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4년간)
- 총사업비 : 23억원 (국비 3, 도비 10, 시군비 10)
- 사업주관 : 전라북도
- 사업내용 : 벽지노선 버스를 소형승합차로 대체, 예약제로 운영하며 문전서비스 및 대중교통서비스 소외지역 제로화

### □ 추진상황

- 국내 최초 버스DRT(도 자체사업) 시범사업 공모 추진 : '15. 1월
- 지역발전위원회 무진장버스DRT사업 공모 선정(국비 9.8억원) : '15. 3월
- 버스DRT 운행개시(정읍 산내면:'15.4월/완주 동상면:'15.6월) : '15. 6월
- 민원개선 행정 우수사례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행자부) : '15.12.3
- 수요응답형교통(DRT) 운영프로그램 개발사업 정부3.0 공모선정 : '15.12월
- 도 2차 버스DRT 공모사업 추진(남원시, 완주군 선정) : '16. 1월
- 국토부 수요응답형교통(DRT) 공모선정 시범운행 개시(임실) : '16. 4월
- 수요응답형교통(DRT) 운영프로그램 개발용역 완료 : '17. 3월

### □ 추진성과

- 전북 콜버스, 민원개선 행정 우수사례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행자부/'15.12월)
- 수요응답형교통(버스DRT) 업무편람 작성 및 전국 지자체 배포('16.10월)
- 수요응답형교통(버스DRT) 성공사례로 전국 확산 기여( '16.12월 기준)
  - 서울, 경남, 경북, 충남, 전남, 제주 등
- 버스DRT 서비스 확대 및 이용자 폭발적 증가( '16.12월 기준)
  - 전북 콜버스 이용자 연간 약 4만명(기존버스 약 1,200명/년)
  - 최초 2개소 → 8개소 시행(남원, 완주3, 진안, 무주, 장수, 임실)

※ 관련부서 : 교통물류도로과

## 7 새만금 전문가 협의체 운영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업비 : 48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새만금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협의체(정책포럼, 워킹그룹) 운영 및 정책토론회 개최

### □ 추진상황

- (전문가협의체 운영)

구분	구 성	역 할	운 영
정책포럼	수도권 중심 인사 22명 (대학총장, 교수, 연구기관 인사 등)	· 새만금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방향 제시 · 정치권, 중앙언론 등에 도 입장 전달	분기별 1회 정도
워킹그룹	도 전북연 도내 전문가 20여명(4개분과)	· 세부 현안에 대한 실천과제 도출	분과별 월1회 정도

- (정책토론회 개최) 관계부처, 주요 정치권, 유관기관 등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력 있는 인사를 참여시킨 공개 토론회 개최('16. 12. 15 / 국회 본관)

### □ 추진성과

- 새만금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12건 과제발굴 후 5건 개선
- 새만금특별법('16.12.2) 및 조세특례제한법('16.12.20) 개정(지원)
  - ▶ 건폐율 완화, 개발사업자 잔여매립지 매수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 개선을 통해 국내기업 입주 및 민간개발사업자의 참여 촉진 기대
  - ▶ 위탁기업에게만 가능했던 국공유지 임대(최대 100년)로 국내기업의 역차별 제거
  - ▶ 네거티브 규제개선 프로세스, 인허가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타 특구와 차별화된 제도개선 기반 마련
- 새만금 주요현안에 대한 논리 및 전략 마련\*을 통해 정책반영도 제고
  - \* 기존 제도개선용역 분석, 새만금 이미지 제고 전략, 농배수 체계 개선 및 오염부하 저감, 국내외특구 사례검토, 내부용지 매립 조기추진 방안

※ 관련부서 : 새만금개발과

# 참고 1

## 2016년도 새만금 제도개선 발굴과제 및 추진상황

과제명	주요내용	추진상황 및 계획
① 석탄가스복합발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관련 규제 개선	석탄가스복합발전(IGCC)의 공급인증서(REC)가 중치 적용방식 개선, 거래시장에서 거래 허용, 의무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계기관 1·2차회의(9.9, 9.28)</li> <li>새만금청과 산업부간 협의(2회)</li> <li>IGCC기업 투자설명 및 논의(12.1)</li> <li>태안IGCC 시설 시찰(12.9)</li> <li>새만금청 IGCC관련 용역 추진('16.12~'17.4), 이후 협의·조정</li> </ul>
② 국내기업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동일하게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혜택 부여 (최대 100%)	<p><b>일부 완료(공유지 임대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유지 기재부 불수용(9.8)</li> <li>공유지 임대료 감면을 위한 새특법 개정 추진('17.1월)</li> </ul>
③ 국내기업 조세 감면(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국내기업에게 법인세·소득세 감면(현재 외투기업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처의견수렴: 기재부·행자부 불수용(9.8)</li> <li>⇒ 지방세 감면 시 예산패널티 적용으로 개선 어려움</li> </ul>
④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시 매립면허권자 동의절차 개선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시 매립면허권자인 농식품부 동의절차 생략	<p><b>완료</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선안 새만금위원회 보고(12.23)</li> <li>지침 및 새특법 개정안 마련('17.1월)</li> </ul>
⑤ 새만금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배제	방조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 이후 공유수면법상 배제규정 적용하여 점·사용허가 배제	<p><b>제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의절차 개선으로 필요성이 낮아져 제외요청(새만금청)</li> </ul>
⑥ 인허가 의제사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공유재산 양여(행자부)</li> <li>ii)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등(산업부)</li> <li>iii) 특정공사 신고(환경부)</li> </ul>	<p><b>일부완료(산업부·환경부 의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자부 공유재산이 발생한 이후 검토 필요(불수용)</li> <li>산업부, 환경부 인허가의제사항 새만금특별법 개정 추진('17.1월~)</li> </ul>
⑦ 공공시행자 범위 확대	공공시행자가 일정비율 이상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도 공공시행자로 인정, 민관합동개발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처의견수렴: 일부수용(9.8) (해수부 수용, 기재부 불수용)</li> <li>기재부 대면회의 거부로 추진지연</li> </ul>
⑧ 부담금 등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농지보전부담금(농식품부)</li> <li>ii)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산림청)</li> <li>iii)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해수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림청 11.14 회의 ⇒ 새만금청 논리보강 이후 재협의예정</li> <li>해수부 11.8 회의 ⇒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대상 사업 적용검토, 개선안 마련(12월~)</li> <li>농식품부와 회의무산(2차례), '17.1월 조정회의 진행예정</li> </ul>
⑨ 새만금시범단지 지정 및 재정지원	새만금에 시범단지를 지정하고 국가의 재정지원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처의견수렴: 기재부 불수용(9.8)</li> <li>기재부 대면회의 거부로 추진지연</li> </ul>
⑩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관리 특례	외국인 근로자 사증발급절차와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을 협의하여 달리 정함	<p><b>완료(법무부 수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만금특별법 개정 추진('17.1월~)</li> </ul>
⑪ 사업시행자(SPC) 구성요건 완화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자 자격요건을 하나의 기업이 참여해도 가능하도록 자격요건 완화	<p><b>완료(국토부 수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만금특별법 개정 추진('17.1월~)</li> </ul>
⑫ 새만금지역 사업에 대한 새특법 규정의 준용	남북2축 도로 등 새만금 내·외부를 연결하는 광역단위 기반시설에 대해 새만금법 적용범위에 포함	<p><b>완료(국토부 수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만금특별법 개정 추진('17.1월~)</li> </ul>

## 참고 2

## 새만금특별법 주요 개정내용

- (추진현황) 발의(16. 7.21) → 국토위 회부(7.22) → 입법예고(7.25 ~8. 3) → 상임위 의결(11.10) → 법사위 의결(11.16) → 본회의 통과(11.17) → 공포(12.2)
-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개 정 내 용
새만금사업 정의 (제2조)	새만금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	세부규정사항을 삭제하고 새만금을 개발·관리·정비하기 위하여 용도별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괄 규정
용도별 개발 기본계획 승인 (제9조3항 신설)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기간 규정 없음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의견 제출
개발사업자 잔여매립지 매수 (제14조 5항 및 6항)	신 설	잔여매립지 장기임대(최대 100년까지) 가능
	잔여매립지 매수 청구기간 : 1년	장기임대 기간 중 청구 가능
인허가 One-Stop 처리 (제17조5항 신설)	신 설	새만금청에 인·허가 의제협의회 개최 근거 마련
네거티브 규제프로세스 도입 (제33조2항)	신 설	새만금위원회 심의 사항에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추가
국내기업 국공유지 임대 (제46조)	외투기업에 한해 최대 100년간 임대 가능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최대 100년 임대 가능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 (제49조 2항 및 4항)	건축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특별법에 의한 새만금개발청장 (다만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필요)
새만금 산단의 새만금청 관리 (제52조의2 신설)	산업법에 의해 전라북도지사가 관리권자	새만금 지역 내의 산업단지 관리권자를 새만금청장으로 지정
건폐율 등 완화 (제69조 6항 신설)	신 설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최대 법정한도의 150%까지 허가 가능
수질오염원 발생지역의 특별관리지역 기간 연장 (부칙 제2조)	2017. 5월까지	2019. 12월 까지 연장

## 8 다문화마을학당 운영 내실화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비 : 도비 326,639천원, 시·군 489,958천원, 합계 816,597천원
- 사업내용 : 교육희망자 수준, 직업 특성에 맞는 한국어 교육

### □ 실태

-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근로자, 난민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문화습득 기회가 여러 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분산되어 있는바 시군에 조직되어 있는 다문화 가족센터로 업무 일원화
- 센터를 활용하여 각종 교육을 체계화하고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대상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다문화 가정에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

### □ 추진성과

- 다문화 마을학당 이수자 : 160개반 948명
- 기간 : 2016. 1 ~ 12월
- 시간별 : 평일 - 102개반 476명, 야간 - 22개반 192명, 주말 - 36개반 280명
- 방식별 : 센터교육 172명 방문교육 776명
- 대상별 : 결혼이민자 567명, 자녀 227명,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154명  
※ 2017. 4월기준 추진실적 - 133개반 559명
- 마을학당 자원봉사자 : 117명

### □ 향후 요망사항

-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다문화 가정·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의 한국어·한국문화 습득과정을 단축하여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다문화 가족센터의 시군별 기능을 수시 파악 지도하여 사업의 지역적 특성과 예산의 효율성측면이 고려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관련부서 : 국제협력과

# 지적 및 개선사항



# 1 순세계 잉여금 발생률 증가 추세

## □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세입 결산액 (A)	세출 결산액 (B)	차입잔액 (C=A-B) (C=D+E+F)	이월액 (D)	보조금 집행잔액 (E)	순세계 잉여금 (F)	순세계잉여 금발생율 (F/A)	비고
2016년	6,065,950	5,734,406	331,544	57,039	721	273,784	4.5%	
2015년	5,766,171	5,433,293	332,878	50,827	580	281,471	4.9%	
2014년	5,275,778	5,007,091	268,687	31,994	4,514	232,179	4.4%	
2013년	5,057,758	4,900,246	157,512	40,545	1,981	114,986	2.3%	
2012년	4,756,311	4,584,635	171,676	51,695	972	119,009	2.5%	

## □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은 법령·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해야 함에 따라
- 2016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0.4% 감소하였지만 2012년과 비교해보면 2.0%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입추계를 소홀히 하였거나 예산 집행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임

## □ 개선방안

- 매년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어 불용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면밀하고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검토가 사료됨
- 사업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미집행액이 발생 할 때에는 반드시 추경에서 조정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함

※ 관련부서 : 예산과

## 2 | 초과세입에 대한 추경예산편성시 적절한 반영필요

### □ 총세입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기정액	예산액	비교증감	비고
예 산 서	4,947	4,947	-	
1차추경예산	4,947	5,186	239	
2차추경예산	5,186	5,257	71	
3차추경예산	5,257	5,502	245	

### □ 문 제 점

- 지방재정법 제36조에 규정에 의하면 예산편성은 법령·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수입 증대를 위해 수입원별로 세원을 엄정하게 포착하여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누락하는 일 없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징수 결정한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계상된 예산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해진 산출기준에 따라 합리적·객관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계 절차에 따라 적기에 집행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함에도,
- 2016회계 결산결과 세입예산에 대한 당초 추계가 너무 과소하게 잡혀 세출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사업집행에 적기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많으며,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할 시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나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설정한도가 없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음.

### □ 개선방안

- 이러한 문제점은 수입금 추계를 소홀히 하였거나 예산 집행 계획이 치밀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지방재정 증대를 위해 수입원별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세원을 엄정하게 포착함과 아울러 증액된 세입예산은 추경시 적절히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곳이나 지자체에 적절히 배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 관련부서 : 예산과

### 3 지방세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방안 강구

#### □ 최근 5년간 지방세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비고
징수결정액(A)	969,307	961,969	878,327	707,022	722,120	
미수납액(B)	35,929	20,205	16,203	15,506	18,389	
결손처분(C)	3,412	2,652	3,621	2,713	6,080	
이월액(D)	32,517	17,553	12,582	12,793	12,310	
미수납액비율(B/A)	3.7%	2.1%	1.8%	2.2%	2.5%	
이월액비율(D/A)	3.4%	1.8%	1.4%	1.8%	1.7%	
재정자립도*	22.45%(예산)	23.48%	21.98%	19.43%	21.28%	재정공시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세외수입] / 총수입

#### □ 문제점

- 재정자립도가 약 21.72%(5년평균)로 열악한 재정여건임을 감안할 때 자체 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미수납액 최소화에 노력해야 하나,
- 2016년 이월액이 32,517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4,964백만원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이월액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 개선방안

- 「지방재정법」제35조가 명시하고 있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주요 재원 이라는 점에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지방세 수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 지방세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각 체납액 발생유형별로 적절한 행정적·재정적 체납처분이 필요하며
- 도세는 부과징수 업무를 시군에서 위임 수행하고 있어 각 시군의 관심도 제고 및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함

※ 관련부서 : 세정과

## 4 | 결손처분시 처리 절차 강화 방안 필요

### □ 2016년 지방세 결손처분현황

(단위 : 백만원)

계	결손처분 사유					결손 후 징 수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 부족	기 타*	
3,412	1,010	69	116	316	1,901	258
(100%)	(29.6)	(2.0)	(3.4)	(9.3)	(55.7)	

\* 기타 : 파산자 및 회사정리절차 법인, 평가액부족 등

### □ 문제점

-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의하면 결손처분의 사유를 ①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②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③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④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6년 회계연도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기타가 1,901백만원 (55.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사유중 100만원이상 결손처분한 금액중 59건 1,669백만원은 지방기본법 제96조의 결손처분 사유가 아닌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평가액부족)에 의하여 처분하였음

### □ 개선방안

-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결손처분의 비중이 큰 만큼 이에 대한 결손처분 근거를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명시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부서 : 세정과

## 5 | 세출예산 전액이월 과다발생 방지방안 필요

### □ 세부사업 예산중 전액이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이월 구분	사업부서	세부사업	예산 현액 (A)	지출 액 (B)	집행 잔액 (C-A)	비율 (C/A)	이월 요구일	
합 계(8건)			4,501		4,501			
명시이월	소 계	7건	4,409		4,409			
	당초예산	농업정책과	방조제개보수	200	0	200	100%	농식품부 국비미송금
		해양수산과	어업지도선대체건조	178	0	178	100%	행정절차 지연
		문화예술과	고은문학사업	200	0	200	100%	문체부 국비미송금
	제1회추경	해양수산과	전라북도 해양수산 발전계획수립	167	0	167	100%	행정절차 지연
		도로공항공과	동향~안성국지도건 설	914	0	914	100%	용역진행
		항만하천과	전라북도 항만 발전 종합계획수립	250	0	250	100%	행정절차 지연
		전라북도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수장고증 축	2,500	0	2,500	100%	
사고 이월	주택건축과	전라북도녹색건축물조 성계획수립용역	92	0	92	100%	용역계약 지연	

## □ 문제점

-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법령,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 당해연도에 집행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 위 현황과 같이 농업정책과 등 6개부서에서는 2016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에 편성된 각각의 사업비 7건 4,409백만원에 대하여
  - 중앙부처 국비 미송금, 행정절차 지연 등을 이유로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아니한채 100% 명시이월 조치 하였고
- 주택건축과에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비 92백만원의 전라북도녹색건축물 조성계획수립용역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용역계약이 유찰됨으로서 당해연도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액 전체에 대하여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음

## □ 개선방안

-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비 예산에 대하여는 연초부터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연도에 집행하도록 하되,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년도내에 예산 집행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연초부터 중앙부처 협의,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여 당해연도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와같이 전액 100% 이월조치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조치가 필요해 보임

※ 관련 부서 : 농업정책과, 해양수산과, 문화예술과, 도로공항과, 항만하천과, 전라북도도립미술관, 주택건축과

## 6 사업별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감소방안 강구

### 가. 세출예산 불용률 100% 현황

(단위: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율
5개부서	5개사업		22			22	
생활안전과	안전교육 활성화	자치단체자본보조	5	0	0	5	100.00%
산림녹지과	산불방지(자체)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4	0	0	4	100.00%
의회사무처	위원회별 의정활동 지원	기타보상금	10	0	0	10	100.00%
농업기술원	고품위 종자생산 기반조성 및 환경개선(보조)(직접)	시설부대비	1	0	0	1	100.00%
농식품인력개발원	농업인력양성교육과정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2	0	0	2	100.00%

### 나. 세출예산 불용률 50%이상 현황

(단위: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비율
12개부서	17개사업		455	161	0	291	
정보화총괄과	정보화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3	1	0	2	77.78%
"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	행사실비보상금	2	1	0	1	69.09%
"	취약계층 정보화교육 지원	사무관리비	2	1	0	1	51.17%
"	중고pc 및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기타보상금	3	1	0	1	52.04%
총 무 과	공무원소통 운영	행사운영비	10	4	0	6	58.68%
축 산 과	구제역 방역대책	공공운영비	4	1	0	2	64.13%
문화유산과	세계문화유산위원회 현지조사 자문보상	기타보상금	4	1	0	3	80.00%
"	전통사찰 보존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3	0	0	3	93.33%
투자유치과	투자유치 심의.자문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5	1	0	4	70.05%
"	투자유치 보조금 심사 자문수당	사무관리비	3	1	0	2	81.67%
기업지원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사무실 임차	사무관리비	25	6	0	19	75.94%
산업진흥과	전기자동차 운영	공공운영비	2	1	0	1	60.29%
국제협력과	세계지방정부연합 참가 운영	외빈초청여비	279	119	0	160	57.17%
새만금개발과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	외빈초청여비	10	5	0	5	52.69%
농식품인력개발원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교과정운영	재료비	43	11	0	31	73.51%
수산기술연구소수산질병센터	연구교습어장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	3	0	4	51.07%
어린이회관	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50	4	0	46	92.12%

## 다. 국고보조금 불용예정액 결산추경 미반영

(단위:백만원)

부 서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비율
새만금수질개선과	하수관로 BTL임대료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6,204	33,146	3,058	2016.10.28. 불용예정통보 2016.12.9. 변경내시

### □ 문제점

- 지방재정법 또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편성된 각종 예산은 면밀한 세부집행계획 등을 수립하여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 계획 변경 또는 집행하지 못할 사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 위 현황 “가”와 같이 생활안전과 등 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5개 사업은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아니한채 100% 불용처리 하였고,
  - 위 현황 “나”와 같이 정보화총괄과 등 12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17개 사업은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현액의 50%이상 불용처리 하였으며,
- 기 편성된 국고보조금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국고보조금 변경통지를 받는 경우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감액조치 등을 하여야 함에도
  - 위 현황 “다”와 같이 새만금수질개선과에서 추진하는 하수관로 BTL사업 임대료 예산 3,058백만원에 대하여 2016. 10. 28. 국고보조금 불용예정 통지 문서를 수령하고도, 확정통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산추경에 감액 요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음

### □ 개선사항

-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결산추경에 정리하고

○ 국고보조금 예산에 대하여 불용예정 통지를 받거나 계획이 변경되어 불용 처리가 예상되는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관련 부서 : 생활안전과, 산림녹지과, 의회사무처, 농업기술원, 농식품인력개발원, 정보화총괄과, 총무과, 축산과, 문화유산과,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산업진흥과, 국제협력과, 새만금개발과,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 여성청소년과, 새만금수질개선과

## 7 | 예산의 성과보고서 실적검증 방법 보완 필요

### □ 현 황

-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르면 사업목적과 명확히 연계된 결과 지향적 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실한 성과분석과 목표달성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성과보고서는 올해 처음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실과에서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한 결과 타 시도와 비교하여 모범적인 결과물이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첫 시행이다 보니 검토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일부 발견되어 향후 의회 결산심사와 2018년 예산심사에 앞서 내용을 추가 수정·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 첨부 1 : 성과지표 산출 기준 변경 사례(성과계획서 대비)
  - 첨부 2 : 측정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 사례
  - 첨부 3 : 달성률 정정 필요 사례

### □ 문 제 점

-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 지난 2008년부터 BSC를 통한 성과관리를 시행해 왔으며, 400여개의 성과지표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서도 BSC 성과지표를 활용함으로써 효과적인 지표관리가 되고 있지만, 기존의 BSC 성과지표를 활용하다보니 예산과 무관한 지표가 사용되거나 투입된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사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그리고, 성과지표 유형을 가능한 결과중심적 지표를 설정하여 운영·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투입 또는 과정지표를 활용하여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목표와 실적이 동일하게 예측가능한 지표가 활용된 문제점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최초 지표 개발시 전문가의 컨설팅 및 성과관리과의 코칭이 부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 또한, 2016년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시 사용된 성과지표 자료수집 방법이 각종 사유로 변경되거나, 오기재, 계산오류 등으로 인한 달성률 오류, 한 지표에 두 가지 이상의 산출방식이 공존하여 달성률 환산에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BSC에 익숙한 직원들이 성과보고서 또한 BSC와 연계되어 있어 달성여부만을 검토함으로써 목표 초과달성시 100% 달성으로 단순기재한 사례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예산의 성과보고서 작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실적에 대한 검증은 현재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좀 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검증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2018년 예산심사 활용을 위해 성과보고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 개 선 사 항

- 예산의 성과보고서인만큼 예산과 무관한 지표는 과감하게 삭제하고 투입 예산과 관련한 지표를 개발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입 및 과정지표로 관리·운영되고 있는 지표들은 결과중심적 지표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아울러, 성과보고서에서 나타난 304개의 성과지표들을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재검토해 개선해야 합니다.
- 각 지표별로 목표치 대비 실적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 성과보고서의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는 등, 성과보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관련 부서 : 예산과, 성과관리과

<첨부1> 성과지표 산출 기준 변경 사례(성과계획서 대비)

실국명	성과지표명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사유
		자료수집방법 (지표유형)	자료수집방법	
도민안전실	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종합계획 수립 및 1단계 사업 추진(산출)	분야별 사망자 수 전수 조사	BSC 코칭을 통해 성과 지표 변경(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신속 정확한 재난정보 제공 및 기반 조성→안전사고 사망자 수 감축)
	민방위경보가청률 (재난 취약지역 경보시설 확충과 완벽한 경보발령으로 미올림 제로화)	종합계획 수립 및 1단계사업 추진	시군 경보시설 신규 설치	경보시설 확충사업과 실제 경보발령 수신을 중 대표 목표치인 경보시설 확충사업 기재
	방사능 안전관리 및 특수재난예방 (원전피해 Zero화 산단화학사고 예방)	주민보호훈련 횟수/공문(산출)	주민보호훈련 관련 공문 및 안전관련 유관기관 합동점검 관련 공문	오기 작성 (안전관련 유관기관 합동점검 횟수 누락)
자치행정국	지역업체 제품 우선구매율	지역업체제품 구매액÷총구매액 /계약대장 /산출	조달청종합쇼핑몰 /결과	성과보고서상 자료수집방법을 잘못 기재함 (계약대장이 맞음)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 강화 (소규모보존 부적합 재산 처분액)	보존부적합재산 처분세입액 /세외수입장수 실적 /산출	보존부적합재산 처분세입액/(실태) 조사 /결과	실태조사→보존부적합재산발굴→처분(매각) →징수 처분액 산출과정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료수집방법을 과정으로 파악
	청사에너지 사용량 절감률	절감률 ('07~'09년 에너지사용량기준) /고지서(한전, 전북도시가스) /산출	절감률 ('07~'09년 에너지사용량 기준)/ 지역에너지 공모선정 /결과	성과보고서상 자료수집방법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
농축수산 식품국	도내 귀농귀촌인수	시군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산출)	통계청 발표자료	자료를 공신력 있는 통계청 자료로 대체

실국명	성과지표명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사유
		자료수집방법 (지표유형)	자료수집방법	
문화체육 관광국	전북문화관광 재단 설립 및 운영	<u>사업비 확보/공모선정 결과</u> (산출)	<u>국가예산 확보</u> (공모 선정결과)	‘사업비 확보’지표는 도 사무이관에 따른 단순지 표로 실질적인 노력과 성과를 나타내는 ‘중앙부 처 공모대응에 따른 국가예산 확보’로 지표를 변경하였음 ※ 2017년 BSC 성과지표 컨설팅 과정에서 반영하였으며, 2017년 BSC 성과지표도 ‘국가 예산 확보’로 변경하였음  - 성과계획서는 12월 확정으로 시기적으로 수정을 못함
복지여성 보건국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 원	<u>생계급여수급 자 수</u> / 행복e음시스 템 / 산출	<u>생계급여수 급 예산지원 현황</u> / 산출	자료수집방법뿐만 아니라 <b>품질 확인까지 포함하여</b> 작성하여 예산지원으로 표현 (자료수집은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소방본부	소방청사 신축착공	소방청사 신축착 공 (산출)  ※ 국민안전처 통계자료	소방청사 신축 착공  ※ 공사 착공계 내부 보고 문서 및 현장공사 진행상황 확 인 등	BSC지표를 토대로 국민안전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계량화된 자료수집방법을 활용함.
농업기술원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대 상자 선정 증 대 및 소득증 가율 제고	<u>사업개소수증 가, 소득증가 율, 자체확산 노력도</u> (산출지표)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결 과 보고서 제출 - 시기 : 2016. 11월 - 방법 : ATIS 입력	성과계획서상 측정산식에 소득증가율만 표기하여야 하 나 작성시 불필요한 지표가 들어있음  사업개소수증가, 자체확산노력도 삭제요

<첨부2> 측정지표가 2개 이상인 경우 사례

실과명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달성률 (%)	비고
감사관	종합청렴도 (등급)	청렴도2등급 부패사책2등급	청렴도2등급 부패사책2등급	100	
기획관	동부권 발전사업 매출액(식품) 및 공정률(관광)	1,100억원, 73%	1,108억원, 75.5%	100	
정보화총괄과	정부3.0 추진과제 발굴	10건 발굴, 4건 선정	43건 발굴, 5건 선정	125	
생활안전과	민생분야 침해사범 검출송치 및 점검단속	70건, 600개소	92건, 767개소	131	
문화예술과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관람객수, 공연횟수(명/명/회)	300천명/30천명/400회	311천명/35천명/456회	104	
자연생태과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에 따른 도민만족도 향상(점)	만족도(77점)	공정율(91.3), 만족도(77.2)	100	
	전북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지 육성 및 기반 조성(%/개)	선달실차조성(10%), 조건 23개	선달실차조성(10%), 조건 23개	100	
물환경관리과	용담호 등 상수원 수질(ppm)	2.7ppm, 3.1ppm	2.8ppm, 3.1ppm	100	
	상하수도 시설 구간 확충(%)	78%, 75%	80.8%, 76.5%	100	
노인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매출액(백만원)	2,300백만원, 1,100백만원	2,600백만원, 1,200백만원	110	
지역정책과	도시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추진 진척도 (개소, 진척도)(개소,%)	3개소, 90%	6개소, 90%	100	
지역정책과	안정적 택지조성 진척도(지구, %)	7개지구, 45%	7개지구, 48%	100	
산업진흥과	중소기업 개발제품 성능인증지원,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 체험방문객 수(건, 명)	90건, 75천명 이상	106건, 78,472명	117	
	바이오클러스터 구축과 LED융복합산업 육성(공정율%)	바이오센터 50%, 비즈니스센터구축 60%	바이오센터 52%, 비즈니스센터구축 65%	104	
농업기술원	소규모 가공 창업 지원사업 산업재산권 확보 및 소득증가를 증대(건, %)	60건, 22%	60건, 30.8%	100	
공무원교육원	기본교육 운영 및 핵심리더 교육과정 내실화(회/명)	18회/ 1,500명	20회/ 1,519명	106	
동물위생시험연구소	축가농가 생산성 향상(두/개/스트로)	50두/975두개/5,100스트로	58두/1018두개/5,955스트로	115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재해예방 사방시설 확충(km,개소)	30km, 63개소	35km, 65개소	109	

<첨부3> 달성률 정정 필요 사례

실과명	성과지표명	목표	실적	달성률 (%)		사유
				성과보고서 기재	정정	
사회재난과	재난대비 안전 점검을 통한 선제적 사회재난예방	20% (감소3개소)	25% (감소5개소)	100	125	100%이상 130%는 미만은 달성으로 여단 100%로 순기재
세정과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	52.5%	65.4%	100	125	
	탈루, 은닉세원 발굴(억원)	100억원	102억원	100	102	
산림복지과	녹색일자리 창출 및 관리(명)	249,135	251,761	100	101	
	산림복지서비스제공(ha)	21	22	100	105	
국제협력과	다문화가족센터 이용률(%)	63.7	64.7	100	102	
전주완산소방서	긴급구조훈련 평가(점)	85.8	100	100	117	
군산소방서	긴급구조훈련 평가(점)	85.5	98	100	115	
남원소방서	긴급구조훈련 평가(점)	85.5	98	100	115	
농촌활력과	도내 귀농귀촌인수(가구수)	8,000	17,500	100	219	
축산과	구제역발생 최소화 및 재발방지(건수)	5건	2건	100	250	
산림복지과	산불 등 산림재해 방지(ha/건)	0.3	0.1	100	300	
	산림자원의 가치증진과 임업인경쟁력 강화(ha)	420	681	100	162	
기업지원과	도내 기업들에 대한 노사분규 발생 억제(발생건수)	3	0	100	300	
환경보전과	환경행정서비스 기업 만족도(%)	80%	94.7%	183	118	오기재
동물위생 시험연구소	인수공통전염병(결핵병, 브루셀라병) 발생두수(건)	260	75	168	347	
생활안전과	도민의 안전의식 목표 달성률	75%	73.5%	100	98	계산오류
자치행정과	대학연계 창의학교 운영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 건수, 시책화)	12건 (시책화 10%)	14건	120	117	
지역정책과	낙후지역 균형개발사업 진척도(%)	80	75	100	94	

# IX. 현장방문 결과

## 1. 전북119안전체험관

### ○ 일반현황

- 시설규모 : 부지 100,144㎡, 건물 7,062㎡, 지하1층 지상2층, 14개동
- 사업비 : 246억원(국비 110, 특교세 10, 도비 126) \* 개관: '13. 3. 26.
- 운영인력 : 31명(소방 20(행정4, 교관 16), 민간위탁 11(안내 2, 시설 3, 청소 6))
- 2016예산 : 1,045백만원

### ○ 향후 계획

- 다목적 교육편의시설 증축('16.2~'17.12) : 1,262백만원

## 2. 전북종합사격장

### ○ 일반현황

- 위탁기간 : 2014. 7. 1 ~ 2017. 6. 30
- 시설규모 : 대지 111,344㎡, 건축연면적 8,601㎡
- 사업비 : 1,770백만원(국비 531, 도비 1,239) \* 2014년도 공모
- 운영인력 : 13명
- 2016예산 : 905백만원(도비 656백만원, 운영수입금 249백만원)

### ○ 향후계획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학생 사격대회(7.21~7.25) 등

### 【관련 사진】



전북119안전체험관



전북종합사격장

X

전년도 검사결과 조치내용



## - 2015회계연도 지적.개선 사항 처리결과 -

### 1.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감소방안 강구

- ①기획관, ②자연재난과, ③일자리경제정책관, ④관광총괄과, ⑤국제협력과,

⑥도립국악원, ⑦보건의료과, ⑧산림녹지과, ⑨소방행정과, ⑩정무기획과, ⑪축산과

### 2. 명시이월·사고이월 구분 불투명

### 3. 보조금 반납에 따른 예산집행 부적정

- ①일자리경제정책관, ②산림녹지과, ③친환경유통과, ④산림환경연구소

### 4.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 · 정산 철저

### 5.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 6. 양성 평등정책 실효적 추진 방안 강구

### 7. 친환경 양식어업육성(김 종묘배양시설) 공모사업 반납

# 1.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감소방안 강구

부서명	①기획관
지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제36조에 의거 법령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된 예산은 빈틈없는 사업추진 및 재정분석 등으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강구하여야 함에도</li> <li>○ 기획관실에서 추진하는 도민제안활성화 추진사업은 예산현액의 78%인 1,520천원이 불용처리된 사례로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였음</li> </ul>
처리결과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사유(경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절감을 위해 아이디어회의를 축소(일반도민 미참석)하고, 심사발표자에 한하여 실비보상금(480천원)을 지급하고 잔액을 불용처분</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용 방지를 위하여 2016년 본예산 미편성</li> </ul> </li> </ul>
부서명	②자연재난과
지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제36조에 의거 법령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된 예산은 빈틈없는 사업추진 및 재정분석 등으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강구하여야 함에도</li> <li>○ 예산현액의 50% 이상이 불용 처리된 사례로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함</li> </ul>
(자연재난과) 처리결과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사유(경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재난과 세부사업 재난상황유지 예산의 목적은 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자를 위한 급량비로 운영</li> <li>- 2014년 기상특보에 따른 비상근무 6회(19일)에 비하여 2015년 운영 4회(8일)로 불용 발생</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연도 내에 예산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결산추경 시 예상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음</li> </ul> </li> </ul>
부서명	③일자리경제정책관
지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제36조에 의거 법령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된 예산은 빈틈없는 사업추진 및 재정분석 등으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강구하여야 함에도</li> <li>○ 기획관실 등 17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20개 사업은 예산현액의 50% 이상이 불용 처리된 사례로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음</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밀한 사업계획과 소요재원 판단으로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li> </ul> </li> </ul>

	○ 사업계획 변경이나 불요불급한 사유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처리 결과 또는 계획	<input type="checkbox"/> 사유 (경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예산은 2014년도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그 이후 인사발령에 따른 시설직 배치로 예산집행 불필요</li> <li>○ 미사용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 08. 08 : 소상공인 희망센터, 옥상 방수공사 요청</li> <li>- 14. 09. 30 : 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내 시설직 직원 미배치로 감리비 1,700천원 편성</li> </ul> </li> <li>- 14. 11. 19 : 설계용역 발주의뢰</li> <li>- 14. 11. 27 ~ 12. 18 : 설계용역 실시</li> <li>- 15. 01. 09 : 명시이월 요구서 제출</li> <li>- 15. 01. 22 : 시설직 직원인사발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직 직원배치로 감리비 1,700천원 불필요</li> </ul> </li> <li>- 15년도 추경시 삭감 요구하였으나, 회계독립의 원칙(명시이월비)에 반하여 불가</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용처리되어 반납된 예산으로 별도 후속조치 불필요</li> <li>○ 후발적 사유로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감독으로 예산절감</li> </ul>												
부서명	④관광총괄과												
지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제36조에 의거 법령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된 예산은 빈틈없는 사업추진 및 재정분석 등으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강구하여야 함에도</li> <li>○ 기획관실 등 17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20개 사업은 예산현액의 50% 이상이 불용 처리된 사례로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음</li> </ul>												
처리결과 또는 계획	<input type="checkbox"/> 사유(경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업 비 : 20,000천원</li> <li>- 지원대상 : 도내에 각종 회의행사를 유치하는 기관·단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국인 200명 이상, 외국인 30명 이상 참석하는 회의행사로서</li> <li>· 도내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하는 경우</li> </ul> </li> </ul> </li> <li>○ 지원결과 : 2개 단체, 5,500천원 지원 (잔액 : 14,500천원)</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5%;">신청단체</th> <th style="width: 30%;">회의(행사)내용</th> <th style="width: 20%;">장소 (숙박인원)</th> <th style="width: 25%;">지원액 (천원)</th> </tr> </thead> <tbody> <tr> <td>전주 신흥학교 총동문회</td> <td>2015년 전주신흥학교 총동문회 하계워크숍</td> <td>무주덕유산리조트 (515)</td> <td>3,000</td> </tr> <tr> <td>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 교육학과</td> <td>전국 교육학과 평생교육 워크숍</td> <td>지리산유스호스텔 (609)</td> <td>2,500</td> </tr> </tbody> </table>	신청단체	회의(행사)내용	장소 (숙박인원)	지원액 (천원)	전주 신흥학교 총동문회	2015년 전주신흥학교 총동문회 하계워크숍	무주덕유산리조트 (515)	3,00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 교육학과	전국 교육학과 평생교육 워크숍	지리산유스호스텔 (609)	2,500
신청단체	회의(행사)내용	장소 (숙박인원)	지원액 (천원)										
전주 신흥학교 총동문회	2015년 전주신흥학교 총동문회 하계워크숍	무주덕유산리조트 (515)	3,00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북지역대학 교육학과	전국 교육학과 평생교육 워크숍	지리산유스호스텔 (609)	2,500										

- 집행잔액발생사유 : 14,500천원(2개단체 구비서류 미비로 지원금 신청 포기)
  - 전국이비인후과 종합학술대회(1,200명) : 10.23~10.24(5백 정도 지원예상)
  - 대한토목학회 정기학술대회(3,000명) : 10.28~10.30(8백 정도 지원예상)

□ 처리결과(계획)

- 회의.행사는 연중 수시 개최되어 정확한 수요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사정에 따라 예산이 과부족한 경우가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나, 편성된 예산은 전액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올해는 1분기에 5개 단체가 신청 예약되어,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신청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임.

- 2016년 신청 단체 현황(예산:20,000천원)

신청단체	개최 날짜	회의(행사)내용	인원 (예정)	지원 예상액 (천원)	비고
5개 단체			4,000	20,000	
대한적십자사전북지사	2016.4.20.~4.21.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총회	400	3,000	
국제구강악 안면외과	2016.4.22.~4.24.	국제구강악 안면외과 학술대회	1,000	5,500	
대한면역학회	2016.7.8.~7.9.	대한면역학회 MUJU SYMPOSIA	300	2,500	
한국상담학회	2016.8.11.~8.13	제16차 한국상담학회 연차학술대회	2,000	6,500	
사한국영양학회	2016.10.20.~10.21	한국영양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300	2,500	

\* 지원기준

내국인	인원	200~500명	501~1,000명	1,001명 이상	참가자 전체 (내외국인 포함)
	지원	1,000~3,000천원	5,000천원 이내	10,000천원 이내	
외국인	인원	30~50명 까지	51~100명	101명 이상	참가자중 순수외국인
	지원	500천원	1,000천원 이내	10,000천원 이내	

부서명 ⑤국제협력과

지적내용

-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제36조에 의거 법령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된 예산은 전액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제협력과에서 추진하는 「재외동포 활동지원 및 초청행사」 사업은 예산현액의 50% 이상이 불용 처리된 사례로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음

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잔액 (불용액)	불용률
재외동포 활동지원 및 초청행사	4,000	1,240	2,760	69.00%

처리결과 또는 계획

- 사유(경과 등)
- 「재외동포 활동지원 및 초청행사」 사업은 2015 파독광부 고향방문 등 예상

	<p>가능한 계획사업이 아닌 관계로 활동지원 수요와 시기를 판단하기 어려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메르스의 여파로 미루어졌던 미국남가주멕시코호남향우회, 칭다오 전북도민회 방문이 취소되었고, 연말에 예정되었던 일본 국제교류자문관 전북 홍보행사 계획이 '16년으로 연기되어 일본 문화체험단 전북방문에 따른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 행사운영비 등이 불용처리됨</li> </ul> <p><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밀한 사업계획과 소요지원 사항을 판단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li> <li>○ 사업계획 변경이나 불요불급한 사유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li> </ul>
<b>부서명</b>	<b>⑥도립국악원</b>
<b>지적내용</b>	청사시설 개선사업시설비 대한 시설부대비 예산현액의 50% 이상이 불용 처리된 사례로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음
<b>처리결과 또는 계획</b>	<p><input type="checkbox"/> 사유(경과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본예산 편성시 도립국악원 본관 청사시설 개선사업시설비 242,000천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1,728천원(0.72%)을 예산편성 비율에 의하여 계상하였음</li> <li>- 공사기간(2015.5.13.~12.4까지) 동안 도청 지역개발과 소속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음</li> <li>- 공사현장이 관내에 위치하고 있고 도청 소속부서에서 출장처리 되어 부득이 감독관 출장여비 목으로 편성된 시설부대비를 집행하지 못하였음</li> </ul> <p><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과-1625(2016.1.28.)호에 의거 불용처리 완료</li> <li>-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음</li> </ul>
<b>부서명</b>	<b>⑦보건의료과</b>
<b>지적내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제36조에 의거 법령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된 예산은 빈틈없는 사업추진 및 재정분석 등으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강구하여야 함에도</li> <li>○ 예산현액의 50% 이상이 불용 처리된 사례로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음</li> </ul>
<b>처리결과 또는 계획</b>	<p><input type="checkbox"/> 사유(경과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거의 모든 위원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어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함</li> </ul> <p><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 분기별로 위원회를 차질없이 개최함으로써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할 예정임</li> <li>○ 불요불급한 사유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삭감하는 등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li> </ul>

부서명	⑧산림녹지과
지적내용	<input type="checkbox"/> 불용률 50%이상 사업현황 <input type="checkbox"/> 2건 : 예산액 11,000천원, 불용액 7,528천원(68.4%) - 산불방지(자체) : 예산현액 4,000천원, 불용액 4,000천원(100%) - 숲가꾸기(직접) : 예산현액 7,000천원, 불용액 3,528천원(50.4%)
처리결과 또는 계획	<input type="checkbox"/> 사유(경과 등) <input type="checkbox"/> 산불방지(자체) : 본 예산은 야간대형산불 발생시 인근 사군 진화대 출동비로 2015년에는 야간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아 미집행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input type="checkbox"/> 숲가꾸기(직접) : 본 예산은 숲가꾸기사업 현장관리용 임차차량 공공 운영비(유류)로 국제유가 하락(유류비 절감)에 따른 불용액 발생 <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 <input type="checkbox"/> 면밀한 사업계획과 소요재원 판단으로 불용방지 노력 및 사업계획 변경이나 불요불급한 사유 등 발생시 재정의 효율성 제고 노력
부서명	⑨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지적내용	<input type="checkbox"/> 전주 혁신도시안전센터(가칭) 신축 사업 시설부대비 6,793천원(91.61%) 불용처리 <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제36조에 의거 법령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된 예산은 빈틈없는 사업추진 및 재정분석 등으로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예산현액의 91.61%가 불용처리 됨
처리결과 또는 계획	<input type="checkbox"/> 사유(경과 등) - 완주군 이서면 용서리 837-7(지방행정연수원 앞) 2층 규모로 119안전센터 청사 신축 중인 사업으로 - 시설부대비 7,415천원이 2015년 예산 편성됨(105천원 집행) - 본청에서 공사 현장까지 거리가 짧고 같은 관내에 위치하여 시설부대비 소요액이 적어 공사 감독공무원 여비의 소요예상액을 명시이월(517천원) 시키고 나머지가 불용(6,793천원) 처리 됨 - 2016년 5월 준공 예정 <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 - 향후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 내에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업계획 변경이나 기타 사유로 집행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삭감 및 이월 시켜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부서명	⑩정무기획과
지적내용	도의원 상해보상금 미집행에 따른 불용액 발생
처리결과 또는 계획	<input type="checkbox"/> 사유(경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원 상해 보상금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나 의원의 사망, 상해 발생 등 지급 청구사유가 없는 경우 불용사례 발생</li> <li>※ ‘15년 예산액 : 36백만원(1인 사망 기준, 2년간 의정활동비)</li> <li>- 불용액 감소방안으로 추경시 불용액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지급사유 발생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li> <li>- ‘16.4.6(화) 권기열 결산검사위원회에 지적된 위 사항에 대해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하였음을 설명한 결과 지적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종결처리한 사항임</li> </ul>
부서명	⑪농축수산물식품국 축산과
지적내용	예산현액 대비 50% 이상 예산불용 ⇒ 불요불급한 사유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경예산 삭감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input type="checkbox"/> 사유(경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사업 : 구제역 방역대책(예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액 : 732,375천원, - 지출액 : 364,505천원, - 잔액 : 367,870천원</li> </ul> </li> <li>○ 동 사업은 도내 인근지역(충남, 충북) 구제역 발생(33건)으로 질병유입 우려가 커 돼지 긴급 예방접종을 위해 백신구입비를 예비비로 긴급 편성 구제역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이나</li> <li>○ 농식품부에서 구제역 발생 시도에 우선공급 등 백신 공급제한에 따라 백신을 공급하지 못한 6개 시군에 대해 교부된 예비비를 회수하여 잔액이 발생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제역 발생 시 백신공급 절차 : 백신 수입업체(SVC) 전량 수입 → 농식품부 백신수급 및 공급량 통제 → 긴급 백신접종지역 백신 공급(시도, 시군)</li> </ul> </li> </ul> <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사업 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사용가능한 예비비를 요구하겠음</li> <li>※ 예비비의 경우 추경삭감 대상 아님</li> </ul>

## 2. 명시이월·사고이월 구분 불투명

부서명	예산과
지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출원인행위한 동부권발전사업 지원외 2건 2,275백만원을 다음연도에 사고이월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명시이월로 분류하여 표기하였음.</li> <li>○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하게 당해연도에 지출이 어려운 것은 사고이월로 분류하여 처리되도록 사전 계도 필요</li> </ul>
처리결과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경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시이월 여부는 지출원인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며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가능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사업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특수한 사정으로 사업 집행 시기가 늦어지는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의회 승인을 얻어 가능(행자부 질의응답, 2014. 10. 28.)</li> </ul> </li> <li>□ 처리결과(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은 그 예산이 편성된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도록 하고,</li> <li>○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재이월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토록 하겠음.</li> </ul> </li> </ul>

### 3. 보조금 반납에 따른 예산집행 부적정

부서명	①일자리경제정책관
지적 내용	<p><input type="checkbox"/>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금 보조사업비가 2,585,205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4,940,401백만원의 52.3%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전북도 재정이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사업추진 미흡 등으로 집행잔액 2,189백만원이 발생하여 국고에 반납해야 할 실정임</li> <li>○ 이는 보조금 사업 시행에 있어 사업계획 변경 및 적기 미집행 등으로 반납되고 있으며, 집행잔액(불용액)의 증가로 인해 도정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및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li> </ul> <p><input type="checkbox"/>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금 예산편성시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당해 사업비를 정확하게 판단, 시기별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임으로써 반납액을 최소화할 것임.</li> </ul>
처리 결과 또는 계획	<p><input type="checkbox"/> 사유 (경과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예산은 주된 반납사유는 예비사회적기업의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비 집행잔액(298,934천원)임</li> <li>○ 사회적기업 일자리지원은 공모신청(기업) → 심사(도 사회적기업 육성 위원회) → 인원결정 → 약정체결(시군:기업) → 익월 사후 인건비 지급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하고 있음</li> <li>○ 일자리지원 심사 시 예산에 맞춘 무조건인 지원이 아닌 지속발전 가능한 기업위주로, 최소지원 등의 원칙하에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인원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음</li> <li>○ 또한, 지원 약정체결 전 참여근로자 신규채용 전까지 공백기간 (1~2월) 및 중도퇴사자에 대한 대체 근로자 확보하기 까지 공백기간 (1~2개월) 발생 등으로도 잔액 발생</li> </ul> <p><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용 처리되어 반납된 예산으로 별도 후속조치 불필요</li> <li>○ 도시군·중간지원조직·사회적기업 간 유기적인 업무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중도 퇴사자 및 이탈자 발생 시 대체 근로자를 즉시 선발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li> </ul>

부서명	② 산림녹지과
지적내용	<input type="checkbox"/> 보조금 반납현황 ○ 보조금수령액 5,332백만원, 반납액 165백만원(3.1%) - '13 임산물유통센터 : 순창군 사업포기에 따른 100백만원 반납 - '14 집행잔액 : 산불방지, 숲가꾸기, 조림사업 등 집행잔액에 따른 65백만원 반납
처리결과 또는 계획	<input type="checkbox"/> 사유(경과 등) ○ '13 임산물유통센터 : 본 건은 공모과정을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법인의 자부담 확보 어려움에 따른 포기, 100백만원 반납 ○ '14 집행잔액 : 본 건은 산불방지, 숲가꾸기, 조림, 국가산림통계 등 16건의 집행(계약)잔액 발생에 따른 65백만원 반납 <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 ○ 공모사업 심사시 신청 법인의 운영현황, 재정여건 등을 면밀히 파악 하여 불용방지 노력 및 사업계획 변경이나 불요불급한 사유 등 발생시 재정의 효율성 제고 노력
부서명	③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자원개발과
지적내용	○ 전북도 재정이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 미흡 등으로 국토환경보존사업 집행잔액 247백만원이 발생하여 국고에 반납해야 할 실정으로 ○ 보조금 사업 시행에 있어 사업계획 변경 및 적기 미집행 등의 이유로 반납되고 있으며, 집행잔액(불용액)의 증가로 인해 도정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 및 주민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불용액을 최소화 하기 바람
처리결과 또는 계획	<input type="checkbox"/> 사유(경과 등) ○ 사방사업 준공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보험료는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산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 상반기에 발생한 계약잔액은 추가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하반기 추진 사업 정산금액(집행잔액)은 시기상 추가발주가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 ○ 상반기에 90% 이상을 발주 및 집행으로 계약 잔액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집행 잔액 최소화

부서명	④ 친환경유통과												
지적내용	'14년 시설원에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의 사업자 포기로 국고보조금 1,364백만원 반납												
처리결과 또는 계획	<p>□ 사유(경과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년 본예산 편성 후 농식품부에서 예산액을 국비 7,966,583천원 확정 통보</li> <li>○ 사업 추진 중 소음으로 인한 축산농가 민원제기로 사업 포기자 발생 * 포기금액 : 김제 2농가 · 1,364,695천원</li> <li>○ 농식품부에 '14년 국비예산 실소요액을 보고하였으나, 사업비가 조정되지 않고 국비 1,364,695천원 추가 송금 (단위 : 천원)</li> </ul> <table border="1" data-bbox="384 920 1374 1093"> <thead> <tr> <th>구 분</th> <th>'14년 본예산</th> <th>농식품부 확정내시 ( '14.5.8.)</th> <th>1회추경 (실소요액 편성) ( '14.9.30.)</th> <th>국비 송금액</th> <th>반납액</th> </tr> </thead> <tbody> <tr> <td>예산액</td> <td>6,499,656</td> <td>7,966,583</td> <td>6,601,888</td> <td>7,966,583</td> <td><b>1,364,695</b></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액 확정내시 지연으로 도, 시·군에서 예산 추가확보, 사업추진 등 일정 부족으로 국고보조금 반납 처리</li> </ul> <p>□ 처리결과(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용된 국고보조금은 '15년 추경에 예산편성 후 반납 완료('15.12.29)</li> <li>○ 사업비의 불용·이월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대상자 후순위자를 미리 선정하여 사업포기자 발생 시 즉시 대체 추진 예정</li> </ul>	구 분	'14년 본예산	농식품부 확정내시 ( '14.5.8.)	1회추경 (실소요액 편성) ( '14.9.30.)	국비 송금액	반납액	예산액	6,499,656	7,966,583	6,601,888	7,966,583	<b>1,364,695</b>
구 분	'14년 본예산	농식품부 확정내시 ( '14.5.8.)	1회추경 (실소요액 편성) ( '14.9.30.)	국비 송금액	반납액								
예산액	6,499,656	7,966,583	6,601,888	7,966,583	<b>1,364,695</b>								

#### 4. 국고보조금 교부 및 집행·정산 철저

부서명	지역정책과
지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토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3개월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u>연차 사업에 대하여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도 재량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있음</u></li> </ul> </li> <li>○ 지방비 분담금 집행실적 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보조금 집행률을 높일 목적으로 일부 사업의 경우 <u>보조금 비율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 집행을 독려하지 않는</u> 등 보조금 집행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li> </ul> </li> </ul>
처리결과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토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완료사업의 경우 회계연도의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받고 있으며,</li> <li>○ '16년도 부터는 연차사업의 경우에도 당해연도 정산을 실시하고 있음</li> </ul> </li> <li>□ 지방비 분담금 집행실적 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비 부담금을 확보한 사업부터 국고보조금을 집행(보조)하고 있으며,</li> <li>○ 보조금 집행비율에 대해서는 시군으로부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입력 자료를 제출받아 시군비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음</li> </ul> </li> </ul>

## 5. 순세계 잉여금 과다 발생

소 실 과 명	예 산 과																																													
지적내용	○ 총 수입액이 전년도 대비 9.3% 증가한 반면,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21.2%나 증가하여 순세계잉여금 증가율이 총 수입액 증가율 보다 2.3배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원별로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거나 추정에서 조정하여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필요																																													
처리결과 및 계획	※ 총수입 대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도 \ 구분</th> <th>순세계잉여금</th> <th>총 수입</th> <th>발생률</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2015년</td> <td>281,471</td> <td>5,766,171</td> <td>4.9(%)</td> <td></td> </tr> <tr> <td>2014년</td> <td>232,179</td> <td>5,275,778</td> <td>4.4(%)</td> <td></td> </tr> <tr> <td>전년대비 증 감(%)</td> <td>49,292 (증 21.2 %)</td> <td>490,393 (증 9.3 %)</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연도 \ 구분	순세계잉여금	총 수입	발생률	비 고	2015년	281,471	5,766,171	4.9(%)		2014년	232,179	5,275,778	4.4(%)		전년대비 증 감(%)	49,292 (증 21.2 %)	490,393 (증 9.3 %)	-																										
	연도 \ 구분	순세계잉여금	총 수입	발생률	비 고																																									
	2015년	281,471	5,766,171	4.9(%)																																										
	2014년	232,179	5,275,778	4.4(%)																																										
	전년대비 증 감(%)	49,292 (증 21.2 %)	490,393 (증 9.3 %)	-																																										
	【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현황 】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계</th> <th rowspan="2">일반회계</th> <th colspan="5">특별회계</th> </tr> <tr> <th>소 계</th> <th>농어촌 주택사업</th> <th>의료급여 기금</th> <th>동부권</th> <th>지역개발 기금</th> </tr> </thead> <tbody> <tr> <td>2015</td> <td>281,471</td> <td>157,288</td> <td>124,183</td> <td>4,105</td> <td>3,762</td> <td>58</td> <td>116,257</td> </tr> <tr> <td>2014</td> <td>232,179</td> <td>164,294</td> <td>67,884</td> <td>5,216</td> <td>2,939</td> <td>28</td> <td>59,702</td> </tr> <tr> <td>증감</td> <td>49,292</td> <td>△7,006</td> <td>56,299</td> <td>△1,111</td> <td>823</td> <td>30</td> <td>56,555</td> </tr> <tr> <td>증감율</td> <td>21.2%</td> <td>△4.3%</td> <td>82.9%</td> <td>△21.3%</td> <td>28.0%</td> <td>107.1%</td> <td>94.7%</td> </tr> </tbody> </table>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 계	농어촌 주택사업	의료급여 기금	동부권	지역개발 기금	2015	281,471	157,288	124,183	4,105	3,762	58	116,257	2014	232,179	164,294	67,884	5,216	2,939	28	59,702	증감	49,292	△7,006	56,299	△1,111	823	30	56,555	증감율	21.2%	△4.3%	82.9%	△21.3%	28.0%	107.1%	94.7%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소 계	농어촌 주택사업	의료급여 기금			동부권	지역개발 기금																																						
2015	281,471	157,288	124,183	4,105	3,762	58	116,257																																							
2014	232,179	164,294	67,884	5,216	2,939	28	59,702																																							
증감	49,292	△7,006	56,299	△1,111	823	30	56,555																																							
증감율	21.2%	△4.3%	82.9%	△21.3%	28.0%	107.1%	94.7%																																							
<전년대비 순세계 잉여금 493억 증가>																																														
① 일반회계 : 전년대비 70억원 감소(△4.3%)																																														
② 특별회계 : 전년대비 563 억원 증가(82.9%) - 의료급여기금 : 8억 증가, 지역개발기금 : 565억 증가																																														
□ 사유(경과 등) - 지역개발기금은 차입금 상환과 기금 용자사업 이외의 사업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차입금 상환과 용자 수요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한 후 불용함으로써, 순세계 잉여금이 과다 발생함.																																														
□ 처리결과(계획) ○ 일반회계 뿐 아니라 특별회계세입 추정, 불용예상액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 6. 양성 평등정책 실효적 추진 방안 강구

부서명	여성청소년과
지적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의 성평등위원회 부의</li> <li>-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인지 예·결산 제도는 양성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성간 평등 의식 확산과 여성 인권 보장 및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데 주안점이 있다 하겠으므로</li> <li>- 양성평등정책의 주요내용의 하나인 성인지 예·결산에 관한 사항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인지 예·결산 현황을 취합한 후 평가 준거와 평가 척도에 의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선행될 수 있도록 성평등 위원회에 상정하고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 평가 의견서를 예·결산서에 첨부하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임.</li>   <li>○ 전라북도 양성 평등 기본 조례 개정 권장          전라북도 양성 평등 기본조례 제7조 6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성인지 예·결산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이 조속히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li> </ul>
처리결과 또는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사유(경과 등)</li> <li>○ 성인지 예·결산은 지방재정법 제3조 2항, 제36조의2, 제53조의 2 규정에 의거 “성인지 예산서”와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한 후, 도의회 심의를 거쳐 성인지 예산 확정 및 결산검사 승인을 받고 있음</li> <li>○ 또한, 성인지 예산의 기초가 되는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전북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에서 사업대상을 심의·확정하고 있음</li> <li><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li> <li>○ 성인지 예·결산 관련부서에서 전라북도 성평등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할 경우, 성인지 예·결산에 대하여 성평등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음</li> </ul>

## 7.친환경 양식어업육성(김 종묘 배양시설) 공모사업 반납

부서명	농축수산물국 해양수산과
지적내용	○ 공모사업 선정 위한 행정력 낭비와 사업 반납금 국비 5억원 패널티 예상 ⇒ 공모사업 참여시 관련주민 사전설명 충분한 협의 필요
처리결과 또는 계획	<p><input type="checkbox"/>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2014년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총 30억원 규모의 친환경 양식어업육성(김 종묘배양시설)공모사업에 선정(2014. 3. 25.)되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추진하였음.</li> </ul> <p><input type="checkbox"/> 사업규모 : 1개소(3,6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 종묘 배양장 990, 육상채묘장 1,650, 냉동망 보관시설 732, 연구·관리시설 264</li> </ul> <p><input type="checkbox"/> 사유(경과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4. 03. 06 군산시 공모사업 계획에 따라 공모 ( 3. 25 선정 해수부)</li> <li>○ '14. 04. 03 사업자 선정 (명품 김 영어조합법인 대표 김석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허가 신고( '14. 7월) → 조건부 승인( '14. 10월) → 건축신고 취하( '14. 10월)</li> <li>※ 주민들이 <b>오염시설로 오인</b>하여 사업추진 지연 장기화(군산시 선연리 구오촌 마을)</li> </ul> </li> <li>○ '14. 08. 11 : 군산시 주관으로 서천군(서풍·선진수산) 유사 사업장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 동행 거부로 군산시 단독방문 실시 후 비오염 시설임을 설명</li> </ul> </li> <li>○ '15. 06. 02 김 종묘 배양장 시설지원 사업 추진 촉구(1~10차)</li> <li>○ '15. 09. 10 사업자 선정 취소(명품 김 영어조합법인 대표 김석배)</li> <li>○ '15. 10. 19 3차 모집공고 (기간 '15. 10. 30까지) → 사업 신청자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산시 수협에서 관심을 표명하고 위판장 부지협의(비용도 105번지) → 위판·어민 복지시설로 토지이용계획상 부적합(군산지방해양수산청)</li> </ul> </li> <li>○ '15. 12. 04 친환경육성사업 포기서 제출 - 군산시 → 전라북도 해양수산과</li> <li>○ '15. 12. 08 친환경육성사업 포기 보고 - 전북도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li> </ul> <p><input type="checkbox"/> 처리결과(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후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참여시 도와 해당 시·군간 충분한 협의로 해당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사업자 선정으로 중앙공모 사업이 기간내에 준공 할 수 있도록 추진</li> <li>○ 해당 공모사업 관련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공모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계획임.</li> </ul>





